

2005년 기준

서비스업동향조사 지침서

CURRENT SERVICE INDUSTRY SURVEY

2011

서비스업동향조사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0년 조사	2011년 조사
사업체 관리	- 표본산출방법 · 도소매업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전문점	- 표본산출방법 · 도소매업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소매점
	- 사업체 정의 변경 ·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생략)	- 사업체 정의 변경 ·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생략)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사업체 대체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계속조사 광역사·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생략)
	- 산업분류 변경(08) · 표본층 : 산업분류 변경이 포괄범위 내 변경이면 계속조사, 포괄범위가 아니면 사업체 대체	- 산업분류 변경(08) · 표본층 : 산업분류 변경이 포괄범위가 아니면 사업체 대체(변동코드 기타(14)로 처리)
	- 조사요령 · 조사담당자는 CASI 또는 통신매체조사를 이용한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조사대상처를 방문	- 조사요령 · 조사담당자는 조사주기별 1회 이상 방문하되 CASI 또는 통신매체조사를 이용한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조사대상처를 방문
조사(세부)항목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 폐업, 응답불응, 기타등의 유고사업체 보고 : 부서장에게 보고 후 서비스업동향과에 메모보고 실시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 폐업, 응답불응, 기타등의 유고사업체 보고 : 유형에 따라 부서장(기관장)에게 보고 후 메모 보고 또는 서비스업동향과 문의
기타 사항	입력시스템	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수정 보완
	조사 사례	조사 사례 수정 보완

차례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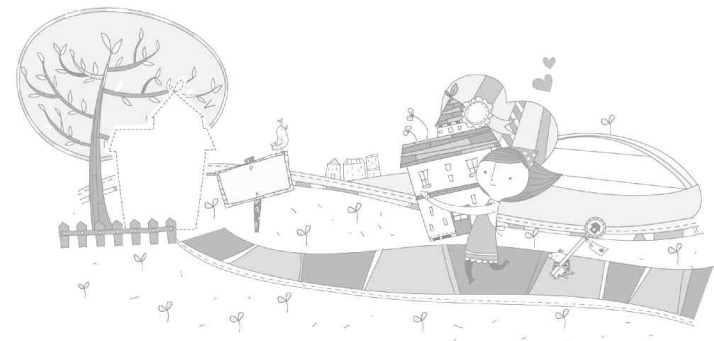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기간	5
5. 조사주기	5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5
7. 조사대상	7
8. 조사항목	10
9. 조사방법	11
10. 결과공표	11
11. 조사체계	11
12. 조사업무 흐름도	12

2편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5
2. 사업체 관리요령	15
3. 현장조사요령	22



I.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7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28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49
4. 조사기록부 작성 57
5. 매출액 집계 유형별 처리 요령 58

II.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60
2. 입력 62
 -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62
 - 나. 조사담당자용 입력 프로그램 62
 - 다. 응답자용 입력 프로그램 69

III. 서비스업 부문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71
2.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개요 72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77
4.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87
5. 서비스업동향조사표[1,2,3] 94



I.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02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104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07
4. 조사기록부 작성 112

II.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113
2. 입력 115
 - 가. 입력에 관한 일반 사항 115
 - 나. 조사담당자용 입력 프로그램 115
 - 다. 응답자용 입력 프로그램 123

III. 도소매업 부문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125
2. 소매판매액통계 작성개요 126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29
4. 조사용어 해설 135
5.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138
6. 상품분류 기준 142
7. 소매업태별 분류 144
8. 서비스업동향조사표[4] 145



Part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기간	5
5. 조사주기	5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5
7. 조사대상	7
8. 조사항목	10
9. 조사방법	11
10. 결과공표	11
11. 조사체계	11
12. 조사업무 흐름도	12



1. 조사목적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생산동향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동향 파악을 위한 소매판매액통계, 유통동향 분석을 위한 도소매업재고액지수 작성에 활용

1 조사개요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50호)
- 응답의무
 -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의무)
- 벌칙규정
 - － 통계법 제41조 제3항(과태료)

3. 조사연혁

- 도소매업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태조사로 통합(2008. 3.)
 - － 서비스업동향조사로 명칭 변경(2008. 11.)

- 도소매업동태조사와 서비스업동태조사 통합전(2008. 2월까지)

－ 도소매업동태조사(승인번호 제10123호)

실시기간	표본규모	작성기관	비 고
1965. 1. ~ 1970.10.	93개	한국은행	서울의 소매업만 조사
1970.11. ~ 1977. 6.	827개	조사통계국	서울의 도매업 추가
1977. 7. ~ 1982. 6.	1,440개	"	
1982. 7. ~ 1988. 2.	3,400개	"	전국지역으로 확대
1988. 3. ~ 1993. 2.	4,000개	통계청	(1990. 12월 통계청 신설)
1993. 3. ~ 1997. 9.	4,497개	"	
1997.10. ~ 2003. 6.	5,547개	"	
(1998. 1. ~)	"	"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소매업태별 지수 추가
(2000. 5. ~)	"	"	소비재별 지수 추가
2003. 7. ~ 2008. 2.	5,205개	"	

－ 서비스업동태조사(승인번호 제10150호)

실시기간	표본규모	비 고
1999. 1. ~ 2000. 1.	약 4,900개	시험조사
2000. 2. ~ 2000. 7.	약 4,200개	본조사
2000. 8. ~ 2004. 2.	"	조사결과 공표
2004. 3. ~ 2005. 2.	약 5,000개	2000년기준 표본개편
2005. 3. ~ 2008. 2.	"	부동산공급업, 초·중·고등교육기관, 예술학원 등 업종 추가

-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서비스업동태조사로 통합후(2008. 3월 이후)

실시기간	표본규모	비 고
2008. 3. ~ 현재	약 9,200개	2005년기준 표본개편
2008. 11.	-	조사명칭변경(동태→동향)
2009. 0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적용

4.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조사기준시점 : 매월 말일
- 조사 및 입력 기간 : 매익월 1일 ~ 20일

5. 조사주기

- 조사 및 작성주기 : 매월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및 운수업조사 결과자료 중 조사대상인 11개 대분류(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2,058,930개 사업체
 - 조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이상(일부 업종은 월평균 200만원 이상)인 사업체를 표본틀로 사용

<대상 사업체 현황>

(2005년 기준, 개, %)

대 분 류	모집단	표본	전수		추출률
			전수	표본	
서비스업	2,058,930	9,534	3,479	6,055	0.46
G. 도매 및 소매업	828,137	3,928	1,110	2,818	0.47
H. 숙박 및 음식점업	574,603	725	246	479	0.13
I. 운수업	15,396	614	313	301	3.99
J. 통신업	9,028	92	45	47	1.02
K. 금융 및 보험업	33,904	182	100	82	0.54
L. 부동산 및 임대업	89,389	319	149	170	0.36
M. 사업서비스업	84,226	1,795	848	947	2.13
O. 교육서비스업	120,721	514	151	363	0.43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4,104	26	26	-	0.04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17,444	766	322	444	0.65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1,978	573	169	404	0.51

※ 운수업은 기업체 기준의 모집단

나. 표본설계

1) 표본규모 산정을 위한 특성치 : 종사자수

2) 표본설계 단위

- 서비스업 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도소매업 부문 : 대표업종

3) 표본산출 방법

- 전수조사
 - 업종(세세분류)별 전체 사업체수 10개 미만
 - 업종(세세분류)별 전체 사업체수가 10~30개 이하이며, 기준년도 시점 업종 평균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
 - 공공기관, 관련협회, 공단(공사) 또는 감독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업종
 - * 소매업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소매점
- 표본조사
 - 전수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 표본규모 결정
 - 통합분류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수를 특성변수로 한 응용절사법(Modified Cut-off Sampling) 적용
- 표본보완
 - 매년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결과 활용
 - 연감보정 시 연간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표본 보완

7. 조사대상

가.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개정, 2007. 12. 28.)상의 21개 대분류 산업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

－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외

제외하는 업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나. 조사단위(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를 혼용)

- 사업체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예】본사, 지사(점), 출장소, 영업소, 상점, 학원, 병원, 백화점, 연구소 등

- 기업체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예】본사(직영점 포함), 운수업 등

다. 조사대상 사업체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및 2006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선정한 약 9,200개

<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

(2010년 5월 기준, 개)

대분류	조사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전수	표본
서비스업	9,170	3,924	5,246
G. 도매 및 소매업	4,041	1,498	2,543
H. 운수업	541	316	225
I. 숙박 및 음식점업	741	278	46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6	211	125
K. 금융 및 보험업	110	99	1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8	122	7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08	393	51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67	345	222
P. 교육 서비스업	510	147	36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8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84	235	24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517	152	365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89	100	89

<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 겸업업체로서 주된 사업내용이 조사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체
-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노점, 행사 등

라. 사업체 구분

장소에 의한 구분

-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면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장소에 의한 구분사례	서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지역적으로 담장, 도로, 하천, 제방 등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
-------------	---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여도 경영주체가 서로 다른 경영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사례	역, 극장, 놀이공원, 백화점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매장이 있는 경우 ■ 임대매장 : 매장별로 각각을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 ■ 직영매장 또는 특정매입매장 : 별도의 계산대가 있더라도 총괄관리 주체에 포함하여 1개 사업체로 조사
---------------	---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

- 장소와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임금지불대상, 매입·매출명세서, 현금출납장부 등 경영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경영장부 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사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경영주가 운영하는 어린이 선교원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경우 ■ 각각 1명 이상의 상근종사자가 있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 사업체로 조사
---------------	--

1 조사개요

8. 조사항목

가. 조사표(4종)

구 분	업 종
조사표(1)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I, J, K, L, M, N, P, Q, R, S, E 포함됨)
조사표(2)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종합휴양업(55113)
조사표(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87)
조사표(4)	도매 및 소매업(G)

나.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항목	- 사업체명 - 행정구역분류부호 - 산업분류 - 사업체일련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월간 영업일수 - 월말 종사자수 - 월간매출액 -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및 사업체 특이사항)
업종별* 특성항목	도매 및 소매업 상품군판매액, 월말상품재고액
	하수·폐기물 처리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
	운수업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부동산업 및 임대업 임대연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학원 수강인원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 업종별 특성항목 조사가 곤란한 경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9. 조사방법

-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자 기입 방식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담당 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 등
-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응답자 기입방식(CASI: Computer Aided Self Interviewing)
- 기타 자료수집방법 : e-mail, Fax, 전화, 우편 등의 통신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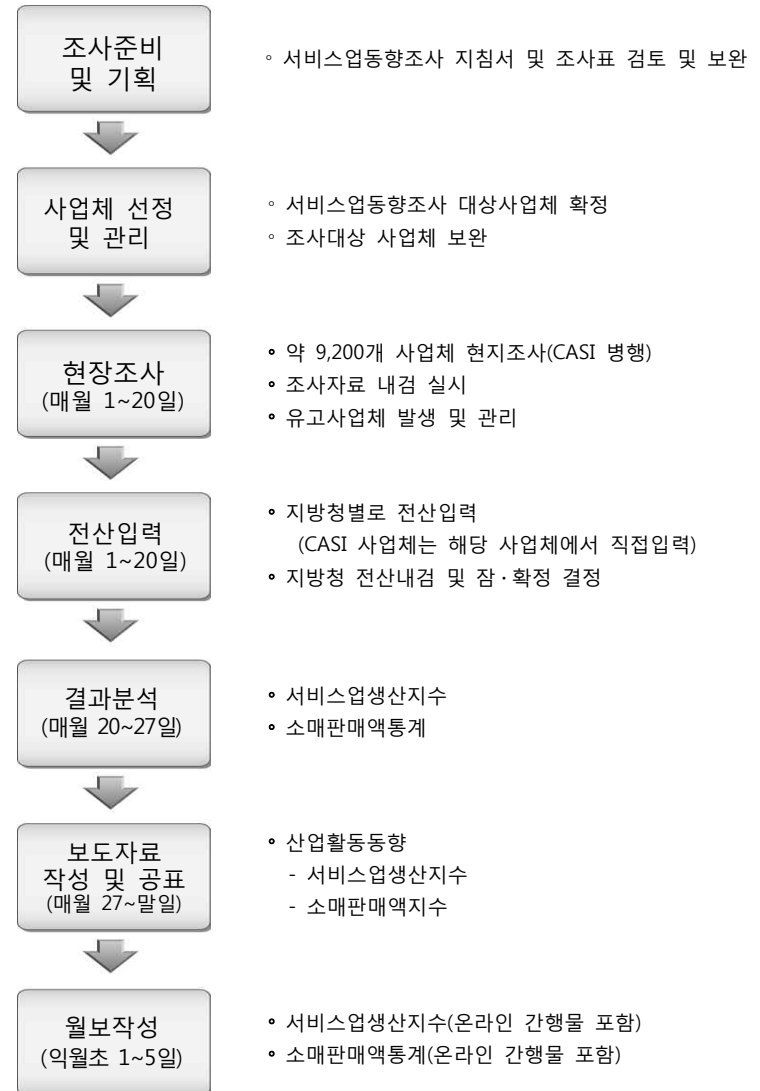
10. 결과공표

- 통계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산업활동동향(매익월말)
 -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 국가통계포털(KOSIS)(매익월말)
 -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매액통계
- 온라인간행물(매익익월초)
 -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통계
- 월보(매익익월초)
 -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통계

11. 조사체계



12. 조사업무 흐름도

1
조사개요

Part 2

현장조사

-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15
- 2. 사업체 관리요령 15
- 3. 현장조사요령 22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 현장조사직원의 기본자세(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

- 조사지침의 명확한 숙지와 성실한 조사
-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 기타 현장조사 직원의 품위 유지

관련 법령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33조 ①항)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3조 ②항)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

2

현장조사

2. 사업체 관리요령

가. 관리목적

- 사업체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규 및 대체 등의 관리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

나. 사업체관리 방법

1) 변동 사업체 관리

<사업체 변동 유형>

변 동 내 용	코 드		변 동 내 역 정 의	조사여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입	01	01	현 사무소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전입	(전)계속조사
전출	02	02	현 사무소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출 * 표본중사업체의 경우 광역시·도간의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지역으로 전출 할 경우 대체조사	(전)조사중지
신규	03	03	기존 사업체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층 사업체	(전)신규조사
명칭변경	04	04	사업체 명칭만 변경	계속조사
사업체 대체	05	05	폐업, 대상외, 소재불명, 응답불응 등으로 표본중의 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표)대체조사
포괄범위 내 변경	06	06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내에서 산업분류변경	계속조사
합병·합산	07	-	조사대상사업체가 타 조사대상사업체 또는 조사하지 않는 사업체를 흡수하여 경영조직이 하나로 결합된 경우	계속조사
규모변경	-	07	조사대상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동월비가 전년보다 20%이상 증감한 경우	계속조사
산업분류 변경	08	-	산업분류변경이 서비스업종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전)계속조사
상품군 변동	-	09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계속조사
폐업	13	13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휴업	(전)조사중지 (표)대체조사
기타	14	14	대상외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산업분류변경 소재불명 : 현 소재지를 떠나 이전한 위치를 몰라 조사 불가능	(전)조사중지 (표)대체조사
응답불응	15	15	응답불응으로 조사 불가능	(전)조사중지 (표)대체조사

* (전)은 전수층, (표)는 표본층

● 유의사항

- 사업체변동 처리방법이 전수층과 표본층이 다르므로 주의
- 변동사항에 따라 계속조사, 신규조사, 조사중지, 사업체대체 등으로 구분
- 변동사항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대체 처리절차를 숙지
- 사업체 변동코드 02, 13, 14, 15인 경우 표본층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 휴업은 변동코드가 없으며 휴업사업체 처리방법에 따름

【 휴업사업체의 처리방법 】

☞ 유고코드는 없으나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년○월부터 휴업'이라고 기재하며, 재영업 시에는 '○년○월부터 영업재개' 라고 필히 기재

☞ 영업 재개 전까지 매출액은 "0", 영업일수는 "1"로 처리

- 사업체의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전수조사, 전수층 : 영업재개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표본층 : 3개월 이상 장기 휴업은 폐업처리

2) 유고사업체 관리

사업체 대체 절차

● 표본층 사업체가 전출(02), 폐업(13), 기타(14), 응답불응(15)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체 대체

(1) 유고사업체가 표본층 또는 전수층인지 확인

- 표본층(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 5, 6, 7, 8) : 사업체 대체
- 전수층(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1, 2, 3, 9) : 조사중지

(2) 대체명부상에서 대체사업체 선정

- 동일한 산업분류 사업체, 매출액 및 종사자수는 유사한 사업체 선정
- * 유고 발생 또는 표본(최초)설계 시점의 종사자수와 매출액(판매액)을 이용할 경우 기존 사업체와 대체사업체 간의 조사상 괴리가 발생함으로 주의(사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및 경영 시의 규모(매출액,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비교)
- 적절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
 - 관내 현장에서 직접 선정
 - 사무소인 경우 지방청에 통보하여 관할지역(동일 시도내)에서 사업체 선정
 - 지방청 관할 지역에 적정 대체사업체가 없는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3) 대체사업체 승인요청

- 서비스업동향조사 입력시스템에 매월 15일까지 대체사업체 승인 요청

도소매업 부문 대체사업체인 경우

대체사업체의 최근 3개월 판매액 및 상품군(소매업에 한정)을 조사하여 입력

(4) 대체사업체 승인완료

- 대체사업체 자료는 20일까지 입력
- 20일까지 입력을 못할 경우, 기존사업체를 '0'처리(익월에 사업체 대체절차에 의해 대체 실시)

2

현장조사

가) 전입(01)·전출(02) : 사무소 관할구역이 상이한 경우

● 전수조사 및 전수층 : 계속조사

- 전출되는 사업체를 관할했던 사무소는 전출여부를 확인한 즉시 전입될 사무소 및 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통보(사업체의 일반현황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
- 조사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전출된 사업체의 조사담당자는 전출여부를 확인한 즉시 해당 사무소간 업무협의를 통해 조사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전출 사업체의 기존 조사담당자는 업무 인계 이후에 전출 사업체의 조사가 단절 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 표본층 : 계속조사

- 광역시·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체
 - 동일 광역시·도 내의 이전(移轉)이더라도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대체
- * 사업체 소재지는 변경이 없으나, 응답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 응답사업체 관할 사무소가 조사

[참고] 관할 사무소가 동일한 경우

● 전수조사, 전수층 및 표본층 : 계속조사

- 전입 지역에서의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가능한 경우 계속조사 단, 표본층의 경우 이전하면서 규모(매출액)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하여야 함

나) 신규(03)

- 기존 사업체 명부에 새롭게 추가된 전수층 사업체
 - 신규사업체 보고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업동향과에 문의
- 신규사업체 보고 양식 참조

서비스업 부문	도소매업 부문
· 도시철도, 외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공항 운영업, 연금업, 위성및기타방송업 등 전수조사 업종은 신설 즉시 신규처리 · 그외 전수층 추가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처리	대형마트, 백화점은 신설 즉시 신규처리

- 연간보정 시 전국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를 기초로 하여 추가된 신규 사업체명부는 산업분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

다) 명칭변경(04)

- 사업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한 후 계속조사

라) 사업체 대체(05)

- 사업체 대체 완료시 자동으로 유고코드가 부여됨(지방청에서 입력불가)

마) 포괄범위내 변경(06)

- 서비스업동향과에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한 후 계속조사

바) 합병·합산, 분할(07) - 서비스업 부문만 해당

(1) 합병·합산

- 전수층 + 전수층
 - 합병한 사업체만 조사하고, 합병된 사업체는 조사중지
- 전수층 + 미조사사업체
 - 합병한 사업체는 전수층 사업체로 조사
- 전수층 + 표본층

- 전수층 사업체가 흡수

- 전수층사업체는 계속조사, 표본층 사업체는 대체
- 표본층 사업체가 흡수
- 기존의 표본층 사업체와 동일한 규모의 사업체로 대체하여 표본층사업체로 조사하고, 흡수한 사업체는 전수층 사업체로 계속 조사

● 표본층 + 표본층

- 표본층 사업체의 조사를 모두 중지하고 사업체는 각각 대체
- 흡수한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인 경우 전수층 사업체로 추가하고 서비스업 동향과로부터 새로운 사업체번호를 부여받아 조사

● 표본층 + 미조사사업체

- 표본층 사업체는 대체하고 합병 후 사업체가 절사점 이상이면 전수층 사업체로 조사

(2) 분 할

● 전수층 ⇒ 전수층+전수층

- 두 전수층 사업체 모두 조사

● 전수층 ⇒ 전수층+표본층

- 전수층만 조사

● 전수층 ⇒ 표본층+표본층

- 표본층으로 바뀐 사업체는 조사 중지

사) 규모변경(07) - 도소매업 부문만 해당

- 조사대상 사업체가 합병, 분할, 이전, 매장확장 등으로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20%이상 증감한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아) 산업분류 변경(08) - 서비스업 부문만 해당

● 전수조사, 전수층

- 변경된 산업분류 내에서 절사점이상이면 계속조사, 절사점 미만이면 조사

2

현장조사

중지(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 조사중지 또는 변경된 산업분류가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14)로 처리

● 표본층

－ 산업분류 변경이 포괄범위가 아니면 사업체 대체(변동코드 기타(14)로 처리)

자) 상품군변동(09) - **도소매업 부문만 해당**

● 소매업 사업체의 기존 조사 상품군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상품군이 조사될
경우 변동처리하고 서비스업동향과에 문의

차) 폐업(13)

● 전수조사, 전수층 : 조사중지(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문의)

● 표본층 : 즉시대체

카) 기타(대상외, 소재불명 등)(14)

● 조사 대상처가 타산업(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변경 또는 소재불명 등

● 전수조사, 전수층 : 조사중지(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문의)

● 표본층 : 즉시대체

타) 응답불응(15)

● 조사 불응은 대응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불응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장(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비스업동향과에 메모보고

● 전수조사, 전수층 : 조사중지(서비스업동향과에 반드시 문의)

● 표본층 : 즉시대체

2

현장조사

3. 현장조사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실제 조사 시 유의사항)

●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할 것

- － 업종별로 매출액 개념이 다르므로 사업체 조사 시 매출액 포괄범위를 매월 파악하여 지침서의 내용과 비교
- － 겸업사업체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조사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 특성항목의 경우 조사단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조사단위와 상이하여 환산하는 경우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
- －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기타항목에 대해서도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용
- －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 신규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사업체는
조사기록부를 이용하여 조사 가능

- － 매월 조사 시 조사표와 조사기록부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규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표를 제시하여 조사에 임할 것
- － 조사기록부에 매월의 조사사항을 반드시 기록·유지하여 조사의 누락, 오기 및 합계착오 등 조사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내용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 조사기록부에도 조사단위를 명확하게 기입(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또한, 업무분장 등으로 사업체 담당이 변동되면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조사기록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 매출액이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작성

● 경상경비지출액 조사 사업체 유의사항

- － 경상경비지출액을 주로 조사하는 업종이라도 경상경비지출액보다 영업수입(매출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영업수입(매출액)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2

현장조사

- 매출액 등에 대한 내용검토 철저
 - 전월 및 전년동월 수준 등을 비교하여 조사
 - 매출액 조사 시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 비고란도 하나의 조사항목
 - 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비고란에 기입
 - 증감률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pm 20\%$ 미만) 가능하면 증감사유,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
- 잠정자료는 반드시 사업체에 문의한 후 작성
 -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반영한 잠정치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월 보합
 - 자료 확보가 곤란한 사업체는 조사기간(20일)이 지났더라도 지수 확정일*까지 자료수정이 가능
 - * 매월 공지사항에 공지(서비스업(25일경), 도소매업(23일경))하므로 필독
 - 지방청에서는 매월 잠정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조사 전 사업체 변동사항 파악
 -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전에 사업체 변동사항을 파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은 수정 후 계속조사
 - 산업분류 변경, 진출·입, 폐업, 합병·합산 등은 [사업체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
- 산업분류는 매월 변경 및 착오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포괄범위 내 산업분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에 변경된 산업분류를 통보 후 계속조사
 - 업종포괄 산업분류 범위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 전수층 사업체 : 조사중지(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 .. 조사 착오, 업종 변경 및 겸업사업체의 주산업분류 변경은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결정
 - 표본층 사업체 : 사업체 대체
- 기타사항
 - 조사담당자는 담당사업체(또는 응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 매출액, 유고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나. CASI, 통신매체(Fax, e-mail, 우편, 전화 등)를 이용한 조사 요령

- 조사담당자는 응답자의 응답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CASI사업체 확대에 적극 노력
- CASI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 CASI를 희망하는 사업체
 - 면접조사가 어려운 사업체
 - 조사환경 등을 고려할 때 CASI가 가능한 사업체
- 아래의 경우 통신매체조사 실시 가능
 -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응답자의 부재 등으로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응답자가 통신매체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 조사대상처가 원거리(60km이상)에 위치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과장이나 사무소장이 통신매체 조사를 허용하는 경우
- 조사담당자는 통신매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조사표 또는 조사기록부에 통신매체의 종류를 기록
- 조사담당자는 조사주기별 1회 이상 방문하되 CASI 또는 통신매체조사를 이용한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조사대상처를 방문
 - 단, 응답자가 응답부담,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는 현장 조사의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방문횟수 조정 가능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1) 지방통계청(사무소) 대응 방법
 - 불응 발생시점 3주내에 최소 3회 이상 출장 설득 지도
 - 지방청(사무소) 명의 조사협조 공문 전달
 - 담당자, 팀장, 과장, 지방청장(사무소 소장)은 사안별로 대처
- 2) 서비스업동향과 대응 방법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불응 및 장기부재에 다른 조사불응 대처에 따라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에서 검토

○ 서비스업동향과 조사협조 문서 발송

- 지방청(사무소)의 조사 설득 시도 이후 계속 불응시 시행

3) 계속불응사업체에 대한 처리

- 불응사업체 자료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체와 부과 대상 제외 사업체를 분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체의 경우
 -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문서로서 알림
 - 계속 불응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름
-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사업체의 경우(경영난, 기준미달 영세업체 등)
 - 지방청(사무소)별로 자체 설득 계획을 세워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유도
 - 대체 가능한 사업체가 발견되면 대체 검토
- 과태료 부과 결정시 납입고지서는 운영지원과 용도계에 의뢰

4) 불응사업체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

①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에 의거 자료제출 협조문서 시행

- 명시해야 할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40조)
 - 자료제출명령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 제출할 자료의 내용
 -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자료를 제출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② 과태료 부과 판단 의뢰 또는 본청 해당과의 자체 판단

- 본청 해당과에 과태료 부과 검토 의뢰
 -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법적근거, 위반 일자,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 본청 해당과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판단

③ 과태료 부과 결정

- 본청 해당과에서는 지방통계청 보고내용 검토 후 간부회의 등을 거쳐 결정
-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방통계청에 통보

④ 사전통보서 발부 및 의견제출

- 지방통계청에서는 조사대상처에 사전통지서를 발부
 -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주고, 과태료 처분에 정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함.
 - 의견 제출 시 지방통계청 과태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수용여부 결정, 의견이 수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⑤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 지방통계청에서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본청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여 발부 받은 후,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처에 송부
 - 조사대상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통계청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함
 - 지방통계청에서는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해야함

⑥ 과태료 납부

- 지방통계청에서는 체납 발생시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본청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여 발부받아 조사대상처에 송부
- 강제징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Part 3 서비스업 부문

I. 조사표 작성요령

-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7
-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28
-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49
- 4. 조사기록부 작성 57
- 5. 매출액 집계 유형별 처리 요령 58

II. 내용검토 및 입력

- 1. 내용검토 60
- 2. 입력 62
 -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62
 - 나. 조사담당자용 입력프로그램 62
 -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69

III. 서비스업 부문 부록

-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71
- 2.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개요 72
-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77
- 4.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87
- 5. 서비스업동향조사표[1,2,3] 94



I.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표 종류가 4종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대상사업체에 적용할 조사표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작성
 - 조사표(1) : 일반 업종(서비스업대분류 H, I, J, K, L, M, N, P, Q, R, S, E 포함)
 - 조사표(2)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종합휴양업(55113)
 - 조사표(3)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조사표(4) : 도매 및 소매업(G)
- 수량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정자로 기입하되,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선(=)을 그은 후 수정
 - 조사표의 일부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관련되는 조사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매출액 조사단위는 **백만원**을 기본단위로 함
- 매출액 조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부가가치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포함 조사함
- 주사업내용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 이상이며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겸업인정 여부는 전수층(전수조사) 및 절사표본사업체인 경우만 해당되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결정
 - 예) 옥탕업의 경우는 체력단련시설운영업 등
- 업종별 특성항목의 조사단위는 지정된 단위(M/T, m², 명, 건, 개 등)에 맞도록 기입하고 조사단위는 업종별 특성항목 참고
- 조사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응답거부 또는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재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됨

3

서비스업
부문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가. 업종별 매출액 유형

1) 업종별 유형

업 종 명	매출액 유형
운송업(육상, 수상, 항공)	· 운수수입액(부대수입 포함)
창고업	· 보관료수입액
음식점업	· 영업수입액
영화산업	· 영업수입액
방송업	· 영업수입액
우편업	· 우편요금, 수수료 수입액
전기통신업	· 요금, 사용료, 수수료
일반은행	· 영업수익 등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영업수익(수수료수입액, 각종 이자 수입액)
보험업	· 영업수익 또는 보험료수입액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기성액, 영업수입(임대료, 수수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 영업수입액
연구개발업	· 경상경비지출액
사업지원서비스업	· 용역수입액, 영업수입액
여행사업	· 여행알선수수료, 승차권판매수수료 등
유아교육기관	· 보육료, 수업료수입액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중등, 고등교육기관	· 경상경비지출액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 수강료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	· 이용료, 입장료수입액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여 수입액이 시장가격수준 이하로 무상에 가깝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업 종 명	매출액 유형
경주장 운영업	· 장내 발매수입액(당첨환급금 포함)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입장료 수입액
산업단체	· 경상경비지출액
예식장업	· 대여수입, 부대수입액
하수·폐기물 처리업	· 영업수입액(처리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경비 지출액으로 조사)
종합휴양업	· 각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 관할 시설의 경상경비지출액

2) 기관조사 업종

업 종	조사대상기관	매출액 유형
철도운송업	한국철도공사	월간 운수수입(여객, 화물, 도시철도)
시내버스운송업	서울특별시	월간 운수수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월간 매출액
일반은행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한국은행	월간 대출금 말잔액
투자기관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월간 대출금 말잔액, 간접상품잔액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금융감독원	월별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비례수당
생명보험업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영업수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손해보험업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경과보험료 ※ 경과보험료 =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전기이월말경과보험료-차기이월말경과보험료
의료보험업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월간 보험료 수입(징수액, 결산기준)

3

서비스업 부문

업 종	조사대상기관	매출액 유형
거주복지시설(노인)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보험 급여 지급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 지급액
금융시장관리업	한국거래소	월간 영업수익
증권 및 선물중개업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월간 주식 거래 대금 및 간접상품설정 잔액
부동산중개업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대학교	기획재정부	월간 경상경비지출액
보건업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월간 청구진료비
경주장운영업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월간 장내 경마권,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골프장운영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월간 골프장 내장객수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문화재청	월간 입장료 수입
기타 스포츠산업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월간 입장료 수입
캠핑 및 베틱업	복권위원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월간 영업수익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수집 운반량 및 처리량

나. 기본개념

1) 서비스업에서의 매출액 개념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한 것임.
- 따라서 **지수의 기초자료**는 산출액(output), 즉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화폐평가액을 이용하여야 하나 자료수집의 편의상 요금,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영업수입)을 주로 조사하는 것임.
- 따라서 **매출액**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생산개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고, 정부가 그 서비스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제외하는 방법

《 요소비용에 의한 평가방법 》

- 간접세와 보조금이 존재하는 제도하에서는 거래의 평가기준으로 시장가격 이외에 요소비용이 있음. 요소비용기준이란 최종생산물의 화폐가치를 발생된 비용측면에서 포착하여 생산요소에 대한 모든 지급 비용을 합계하여 구하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자료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조사된 것이므로 개개의 서비스를 요소비용으로 사전 평가하기는 곤란함. 다만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 이외에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면, 생산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요소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장가격에서는 제외되었음.

* 요소비용에 의한 평가금액

=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금액 - 간접세 + 보조금

- **서비스업동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 즉 **요소비용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2) 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연도(Policy Year 또는 Underwriting Year)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통상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의 경과기간과 미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간보험료를 배분함. 이 경우 전자를 **경과보험료**,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하며, 보험료 산출에는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을 월납, 분기납 또는 반년납으로 분할납입하므로 경과, 미경과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중요함**

3) 경상경비지출액

■ 경상경비지출액 개념

-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산취득 및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경상비 지출액임.
- **경상경비지출액 = 인건비 + 임차료 + 세금과 공과 +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 인건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
- 임차료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 건물, 장비 등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 세금과공과는 해당 조사월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제외
-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제적 가치
- 기타에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교통비, 잡비, 용역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

3

서비스업 부문

■ 경상경비지출액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념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耐用)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규정(법인세법시행령 31조)
* 수익적지출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함
-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고정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의 경우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액에 가산되어 차기 이후로 이연(移延)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함

〈 자본적 지출 〉

-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용연수(可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함
-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그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소비적 경비)이라고 하며,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계상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등의 과목으로 비용에 계상함. 특정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가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가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구별은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중요함. 정부가 도로·주택 등을 건설하고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비용지출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것도 자본적 지출임

〈 수익적 지출 〉

- 기업회계상에서 손익거래(損益去來)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
- 기업회계에서는 금전의 유출인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별. 이는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 경우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며, 자본거래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함

■ 수선비

-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의 물적 소모를 보충하며 그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경제가치
- 수선활동을 사외에 의존할 경우 수선비는 단일계정이 되지만, 수선활동을 사내에서 실시할 경우 복합계정이 됨.
- 수선활동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나 노무비 및 경비는 모두 수선비를 구성, 또 수선에 의해 유형고정자산의 내용(耐用)연수가 연장되어 가치가 증가하면 그 해당액을 파악하여 자산원가에 가산해야 하므로 자본적 지출이 됨

3

서비스업 부문



다. 업종별 개요 및 매출액 조사방법

1) 운수업(H)

운수업의 업종 개요

-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운송업 : 노선 또는 정기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운송업의 매출액은 운수수입이며 창고업의 매출액은 보관료수입, 터미널시설운영업은 영업수입(수수료 및 임대수입 등)으로 조사

● 운송업(철도(491), 육상여객(492), 도로화물(493), 소화물전문(494), 수상(50), 항공(51))의 매출액은 조사대상월에 사업체의 운수활동(여객, 화물운임)으로 벌어들인 **운수수입액**을 조사하며, **부대수입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포함**

- 운송업체의 지입차량(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운수수입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포함조사. 단,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매출을 적용하여 지입차의 운수수입을 산출한 후 포함조사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보관 및 창고업(521),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 화물취급업(5294)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수수료수입, 보관료, 서비스료, 주선료** 등을 조사
- 여객(52912)·화물(52913)자동차터미널운영업의 매출액은 터미널시설 운영업체가 당월에 판매한 **승차권판매수수료 및 화물운송알선수수료 수입액**을 포함한 **전체의 영업수입** 조사
- 터미널임대업 등의 수입이 수수료수입액보다 큰 경우는 서비스업 동향과와 협의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의 매출액은 월간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의 **통행료 수입**을 조사
- 무료시설로 바뀌는 경우는 조사 대상사업체에서 제외하고 신설 사업체가 발견되면 추가

2) 숙박 및 음식점업(I)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 개요

- 숙박업 :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됨

■ 숙박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숙박료수입)이며, 음식점업은 음식물을 판매한 영업수입으로 조사

● 숙박업(55)

- 호텔업(55111), 여관업(5511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을 조사하며,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영업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 휴양콘도운영업(55113)은 숙박업,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각 사업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하여 조사
- 숙박업시설운영업(551) :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 음식점업(561) :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업 등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 : 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3

서비스업 부문

* 골프장 운영업(91121)의 매출액은 회원 및 비회원 골프장사용료와 부대시설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연회비는 포함발생한 해당월의 매출액에 포함)

· 기타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업관련 매출

● 음식점업(56)

- 음식물을 판매한 금액(영업수입) 조사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영상 제작 및 배급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방송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
- 통신업 :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우편 활동도 포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 정보서비스업 :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3

서비스업 부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으로 조사

● 출판업(58)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며 서적출판업(5811), 정기간행물출판업(5812)로 구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5912)은 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및 복제,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은 관람료 수입을 조사

● 방송업(60)

- 지상파방송업(6021),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6022)은 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기타수입을 합산한 영업수입을 조사

● 통신업(61)

- 우편업(611)은 우편물요금, 우편수수료, 우편엽서판매, 소포우편물요금 등을 조사하며, 단 우체국의 금융·보험활동에 의한 수입은 제외시킴
- 유선통신업(6121), 무선통신업(6122), 기타전기통신업(6129)은 통신회선을 제공하고 징수한 요금 및 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수수료를 합산하여 조사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은 용역매출액과 자문 및 제품매출액을 포함한 영업수입을 조사(상품매출액은 제외)

● 정보서비스업(63)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4) 금융 및 보험업(K)

금융 및 보험업의 업종 개요

- 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 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
-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이 포함됨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

■ 금융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익, 보험업은 영업수익 또는 보험료수입으로 조사

● 금융업(64)

- 일반은행(6412)은 영업수익(이자수익, 수수료수입 등)을 매출액으로 조사
- 외환거래이익은 매월 조사표 비교란에 기입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64913), 그 외 기타여신금융업(64919)은 수입수수료(가맹점·통신판매·해외수입·현금서비스·연회비·연체·할부·수수료) 및 수입성 이자(카드론, 수요자금융이자, 단기대여금이자, 유가증권이자)의 합계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조사
- 금융리스업(64911)의 매출액은 운용리스를 포함한 영업수익으로 조사

● 보험 및 연금업(65)

- 생명보험업(65110), 보증보험업(65122)은 영업수익을 조사
- 손해보험업(65121)은 경과보험료를 조사
- 건강보험업(65131)은 피보험자에게서 징수한 보험료를 조사
- 연금업(65303)의 매출액은 연금지급액, 공제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조사
- 공제업의 영업수익은 기금조성수익 및 기금운용수익 조사

※ 기금조성수익 및 기금 운용수익

- 기금조성수익 : 회원 납입 공제료(회비), 수탁금 등
- 전 회원의 기금조성수익이 연1회 또는 분기별 발생하는 경우는 월별 균등 배분. 단, 연간 공제회비를 납입하더라도 회원들의 공제회비 납입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기금조성수익을 그대로 조사
- 기금운용수익 : 이자수입, 배당금, 용자수익 등 금융수익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 금융시장 관리업(6611),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662)은 영업수익(수수료수입 등)으로 조사

5) 부동산업 및 임대업(L)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개요

- 부동산업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임대업 :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부동산업 및 임대업 매출액은 기성액 및 영업수입(임대료, 수수료) 조사

● 부동산업(68)

- 부동산임대업(6811)은 임대료수입을 조사
- 전세금 및 보증금은 조사대상 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조사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은 기성액을 조사
- 기성액은 도급액(공사계약액)에 월별 공정률(기성률)을 곱한 실적

3

서비스업
부문

- 부동산관리업(6821)은 관리비 청구액을 조사하며,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 또는 건물관리위탁인에게 청구한 관리비 총액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지서 전체금액(관리비납부액총액) 기준으로 하되 비경상적 충당금(예시 : 단지내 체육시설 운영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은 제외
- 부동산 감정평가업(68222)은 감정평가수익, 지가평가수익과 임대수익 등 부대수입을 조사

● 임대업(69)

- 운송장비 임대업(69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6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은 리스료(임대수입)를 조사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의 기초 탐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
- 전문 서비스업 :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의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 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디자인 전문 서비스 활동과 수의활동, 통역 및 번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3

서비스업
부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영업수입액(수수료 등)으로 조사

● 연구개발업(70)

- 연구개발업(70)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사업비에는 연구비,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며, 일부 영업수입이 발생하여도 매출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 전문서비스업(71)

- 법무관련(711), 회계 및 세무관련(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

- 건축 및 조경설계업(7211), 엔지니어링업(7212),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은 월별 진척률을 적용하여 매출액 조사

●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 전문디자인업(7320), 사진촬영 및 처리업(7330)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지원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
 - ※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호, 경비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용역수입, 수수료 등)으로 조사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경비, 경호서비스업 및 보안시스템 운영업(753),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759)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 여행사업(752)은 여행알선수수료, 철도 및 비행기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8) 교육서비스업(P)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력 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됨

▣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수업료 수입(수강료)으로 조사

● 정규교육기관(851-853)

- 유아교육기관(8511)은 보육료 및 수업료 수입을 합산한 금액 조사
 - 병설유치원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하며 수업료 수입은 제외
- 초·중학교(85211), 고등학교(85212)는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시·도 교육청에서 조사(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통합시스템 이용)
- 대학교(853)는 학교에서 지출한 운영비용(경상경비)을 조사
 - 사립대학(교)은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조사하며, 국립대학(교)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

※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

- 학교의 증·개축 등 자본적지출은 제외
 - ☞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 일반 학원(855)

- 일반 교습학원(8550)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조사(실험실습비, 자격시험응시료는 제외)
- 방문(85503) 및 온라인교육학원(85504)은 출판사업 매출액은 제외하고 방송사업, 뉴미디어, 기타사업 매출액을 조사

3

서비스업 부문

● 기타교육기관(856)

- 예술학원(85620),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85699)은 운영수입으로 조사
 - ※ 학원운영수입 : 학원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 운영수입 등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의 매출액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조사
-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교육시설(85630)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보건업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됨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거주, 비거주가 모두 포함됨

■ 보건업의 매출액은 진료비,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보건업(86)

- 병원(861), 의원(862)은 각급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월간 진료비를 조사
- 각급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총진료비 + 산재보험의 월간 진료비 지급액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거주복지시설(871),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872)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월(분기)단위로 집행하는 예산금액을 경상경비지출액(예산집행액)으로 조사
- 분기로 집행되는 경우는 균등 분할하여 적용함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 매출액은 영업수입이며,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이용료수입, 입장료수입으로 조사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9011), 공연단체(9012),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업(9019)은 입장료 수입을 조사
- 도서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은 월간 이용료 수입 또는 입장료를 조사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보조금 포함
- 입장료 수입이 적고, 보조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 경주장운영업(91113)은 장내에서 발권된 마권, 경륜권, 경정권 등의 발매수입만 조사(당첨환급금 포함)
- 골프장운영업(9112)은 회원 및 비회원 골프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연회비는 발생 시 해당 월에 포함하여 조사
-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은 당월 회비 및 입장료수입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조사
- 입장료 수입이 적고, 보조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그외 기타운동시설운영업(91139)의 매출액은 당월 회비 및 영업수입을 매출액으로 조사

3

서비스업 부문

- 기타 스포츠산업(스포츠클럽 운영업(91191))은 입장료 수입만 조사(부대 수입 제외)
- 실업경기단체,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등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 개요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

■ 산업단체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하며 기타 업종은 영업수입(수익)으로 조사

● 협회 및 단체(94)

- 산업단체(9411)는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 수리업(95)

- 자동차 수리업(9521)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입을 조사, 부품비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
- 가전제품 수리업(9531)은 가전 A/S센터를 기준으로 수리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 조사

● 기타개인서비스업(96)

- 장례식업 및 관련서비스업(9692) 중 경조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운영하는 상조서비스업은 장례식에 소요(지급)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할 경우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예식장업(9699)은 예식장대여 수입과 사업체에서 직영하는 영업활동(음식점, 사진·비디오촬영, 주례알선, 꽃값 등을 합산한 금액) 수입을 합산한 금액 조사
- 예식장에서 직영하지 않는 음식점의 매출액은 제외

1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업종 개요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고형 또는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됨

■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영업수입액(처리비 등)을 매출액으로 조사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에 속하는 업종의 매출액은 처리비 등 영업수입액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서비스업
부문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체 기본항목

사업체명											
※ 행정구역 분류부호	※ 산업분류	※ 사업체 일련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담당자 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을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지사(점)인 경우 지사(점)까지 기입
예)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 사업체명의 공식명칭이 영어인 경우 그대로 기입
예) 케이티(주) (X) → KT(주) (O)

● 행정구역분류부호

-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참조하여 시도, 시군구, 동읍면 코드 7자리를 선택 기입

● 산업분류

- 해당 사업체의 주산업분류를 산업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 ※ 겸업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류가 주산업분류임

● 사업체 일련번호 : ①②③④⑤⑥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유고발생할 경우 -01, -02...순으로 대체 번호 부여됨

<사업체번호 체계>

사업체(표본) 유형	사업체번호	비 고
◦ 전수조사, 전수층	0001 ~ 3999	전수업종 및 업종별 절사점이상 사업체
◦ 표본층	4000 ~ 7999	업종별 절사점 미만 사업체
◦ 절사표본	8000 ~ 8999	업종내에서 일부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사업체
◦ 본청조사	9000 ~ 9999	기관 및 일괄조사 사업체

● 사업체고유번호

- 행정자료팀에서 부여한 사업체번호

● 담당자 ID : 조사담당자의 ID를 정확하게 기입

나. 조사표별 조사항목

1 월간 영업일수 일

● 조사대상 월에 실제로 영업한 일수 기입

-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실제 영업일수를 기입
-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
-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일수 증감사유는 반드시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기입

2 종사자수 종사자수 명

● 매월 말일 기준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큰 사업체는 월평균 종사자수를 조사하고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
-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기입

3

서비스업 부문

- 인력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본부 종사자와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지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수까지 포함해서 기입
(단, 종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999'로 기입)

다음의 경우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 공익근무요원, 각종 단체의 회원
- 무급 비상근임원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비고란에 기입)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나,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 소속 근로자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③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임금 또는 급여를 받으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⑤ 기타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 급여는 없음,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유흥종사자 등

3

서비스업 부문

③ 월간 영업실적

조사표(1) 일반조사표

※ 산업분류	(1) 주요사업내용 (업종명)	(2) 월간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 항목명	※ 단위	십	만	천	백
5 5 1 1 1	호텔업					2 1 1							
합 계								*****	***	*	*	*	*

(1) 주요 사업내용

- 사업체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
☞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하여 조사
- 매월 조사 시 사업체의 산업분류와 주요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월간 매출액

- 월간 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을 조사
☞ 업종에 따른 매출액 개념 및 업종별 매출액 조사방법 참조
- 매출액(영업수입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임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 경상경비지출액은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산취득(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및 자본적 지출(건물 증·개축비 등)을 제외한 경상적인 지출액임

- 월간 매출액 규모가 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반올림하여 기입
(단, 반올림 후 매출액이 0인 경우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금액 기입)

(3) 업종별 특성항목

- 업종별 특성항목 단위 및 수치를 기입
 - 운수업은 수송인원수 또는 취급화물량을 기입
 - 운송업인 경우 조사 대상 월의 총수송인원수를, 화물취급업인 경우 취급 화물량을 기입(M/T(metric ton)=1,000kg)
 - ※ 택시, 시외·시내버스 등 특성항목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의 경우 조사대상월의 총관람자 수 기입
 - 단, 지상파방송업 등 관람자수가 특정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특성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연면적(m²)을 기입
 - 운송장비임대업은 차량보유대수 기입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에 한하여 조사대상 월 말일을 기준으로 총수강 인원수를 기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기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조사대상 월의 총입장객수 기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조사대상 월 말일 기준의 이용객수를 기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예식장업에 한하여 대상월의 예식건수를 기입
 -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량(M/T)을 기입

【참고】 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업 종	매출액	특성항목	단 위
·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업수입액(수수료)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	M/T
· 운수업	영업수입액(운송수수료)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명 M/T
·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입액, 매출액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총가입자수 (전기통신업만 해당)	명
· 금융 및 보험업	영업수입, 여신액, 연금지급액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액(부동산공급업)	임대연면적 (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 (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m ² 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지출액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 교육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운영비용 등		
.. 중등 고등교육기관	경상경비지출액		
.. 학원	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운영수입 등	수강인원수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입장료)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예식건수 (예식장업만 해당)	건

3

서비스업 부문

조사표(2) : 종합휴양업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① 숙박업 (551)	◦호텔(55111)					5	객실수	실					8	2		
	◦휴양콘도운영업(55113)					8	객실수	실					9	0	0	
	◦기타					0	객실수	실								
	소 계(551)					9	*****	***	*	*	*	*	*	*	*	*
② 음식점업(561)						2	객석수	석					8	0	0	
③ 스포츠 및 오락 관련업 (91)	◦골프장(91121)				1	2	입장객수	명								
	◦스키장(91122)					0	입장객수	명								
	◦유원지 및 테마파크 (91210)					3	입장객수	명								
	소 계(91)				1	5	*****	***	*	*	*	*	*	*	*	*
④ 기 타						2										
⑤ 합 계(①+②+③+④)					2	9	*****	***	*	*	*	*	*	*	*	*

☞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매출액이 집계되므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 종합휴양업은 숙박, 음식점, 교육문화시설,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기타운동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해당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숙박업(551) :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 음식점업(561)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 : 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 기타

조사표(3) : 사회복지서비스업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 (백만원)						
		조	천	백	십	억	천	백
① 거주 복지시설 (871)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8712)							
	◦기타 거주 복지시설(8713)							
	소 계(871)							
② 비거주 복지시설 (872)	◦보육시설(8721)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8729)							
	소 계(872)							
③ 합 계(①+②)								

- 월간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 집행액임

-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 군, 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 집행액을 매출액으로 기입하며, 월별 결산(보고)하지 않는 경우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을 기입

4)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전년동월에 비해 $\pm 20\%$ 이상 변동이 있거나,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입
단, 영세사업체(월 매출액 4백만원 이하)의 경우 반올림 등으로 $\pm 20\%$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AX		
			E-mail		

증감사유 예시

기상악화로 감소, 명절영향으로 증가, 파업, 휴업, 설립, 할부판매, 신기술 도입, 시설확장·축소에 따른 증감, 판매가격의 변동에 따른 증감, 시설보수에 따른 증감 등

- 응답자가 소속한 응답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

- 응답자는 조사실시기간에 실제로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기입

-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조사표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조사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입

4. 조사기록부 작성

- 사업체가 대체될 경우 기존 사업체의 조사기록부를 대체사업체의 조사기록부 뒤에 편철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체 인수인계시 사업체 특이사항 및 연간보정 등의 사업체 주요사항을 자세히 인수인계해야 함

-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지사(점) ③ 본사(점) → 지사(점)수 ()개
 -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는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지사(점)는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
 - 본사(점)(1기업 다사업체)는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로서, 지사(점)수를 기업
 -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체(기업체)는 산하의 모든 직영 지사(점)의 실적을 포함하여 조사
 - 또한, 산하 사업체의 사업내용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한 후 처리
- **제공서비스 내용** : 해당 사업체의 주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록
- **조사참고 사항**
 - **매출액계열** : 매출액 계열 상세히 기록
 - **조사가능일** : 조사자료 수집 가능일 기록
 - **조사방법**
- **메모** : 해당 사업체정보를 상세히 기록

3

서비스업
부문

5. 매출액 집계 유형별 처리 요령

가. 분기별로 집계되는 매출액 처리

- 대상사업체에 문의 후 경영실태 등을 반영한 월별 잠정치 조사
- 매출액 처리
 - 월 매출액이 분리되는 경우 월별 매출액을 그대로 기입
 - 월별 매출액이 분리되지 않고 분기 매출액 자료만 수집되는 경우 월별 균등 배분하여 입력
예) 학원, 유치원 등에서 분기 또는 반기에 정액으로 납입되는 학원비, 보육료 등

나. 자료수집 지연 사업체의 매출액 처리

- 사업체에 문의 후 잠정치로 조사, 다음달에 전월자료에 대한 확정치 조사 입력
 - 잠정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월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합처리
 - 잠정 사업체의 경우 비고란에 “금월자료 수집지연”, “분기결산 사업체”등 사업체 특이사항 반드시 입력
 - 전월 및 전전월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는 금월 조사 시 전월의 매출액을 입력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
 - 3개월 이전의 자료가 변동된 경우는 연간보정 시 처리

※ 잠정사업체 관리 철저

-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는 3개월이상 잠정사업체 리스트 관리 철저
- 확정자료 확보 시 조속히 반영, 잠정자료와 확정자료간의 차이 분석을 통하여 잠확정 차이 최소화 노력

다. 표본사업체를 대체한 경우 전월매출액 조사

- 표본사업체 대체 후 새로운 사업체의 전월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조사 자료를 기록부에 기재
- 입력시스템의 비고란에 전월자료 입력

라. 겸업사업체의 조사

- 서비스업이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서비스업종인 경우에 조사대상사업체가 되며, 타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
- 서비스업부문의 겸업인 경우
 - 대상 : 전수층 및 질사표본사업체
 - 분리하고자 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일정규모(30%)이상인 경우 분리하는 것이 원칙
 - 단, 매출액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규모가 작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조사
 - 업종 분리는 사전에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마. 진척률(진행률)에 의한 조사

- 수주한 제품, 용역 등을 완성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수주매출액에 조사원의 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한 기성액 조사
- ☞ 진척률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품을 인도한 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월에 매출액으로 조사

바. 국고보조금 조사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의 조건에 따라 집행되며 사업체에 지급될 금액은 사업기간 이전에 확정되고, 확정된 통지를 받은 후에 수혜를 받음
- ☞ 보조금이 발생한 조사대상 월에 영업수익액과 합산하여 조사하며, 특이사항에 보조금 금액 기입

3

서비스업
부문

II.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 조사담당자는 조사된 자료를 입력 또는 보고하기 전에 내용검토
- 조사담당자 이외에 다른 조사담당자 또는 조사팀장이 추가로 내검 실시
- 조사담당자는 내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표에 증감사유를 상세히 기입

가. 현장조사 및 입력부문

1) 담당자 : 조사 담당자

2)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조사표작성	○ 사업체 변동사항 확인 · 사업체명 · 소재지 변경, 휴 · 폐업, 겸업 등 확인 · 산업분류 변경/분류착오 여부 확인 ○ 조사항목 누락점검 · 매출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누락여부 확인
2단계	자료입력	○ 유효 응답값 여부 확인 · 조사항목 정확성 확인 ○ 항목별 증감사유 확인 · 매출액 전월/전년동월비 $\pm 20\%$ 이상인 경우 사유입력 ·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특이사항 등 입력 ○ 잠정 및 확정자료 여부 확인
3단계	자료입력후	○ 매출액 시계열 검토 ○ 수준점검 및 관련항목점검 · 사업체의 매출액 3개월 수준점검 · 매출액과 영업일수, 종사자수, 특성항목 등 비교

나. 본청 자료처리 부문

1) 담당자 : 본청 담당자

2)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자료집계	○ 사업체 변동사항 확인 · 대체사업체 적정성(매출액, 종사자수 등) 검토 · 유고사업체 변동사항(신규/폐업/합병 등) 확인 ○ 입력사항 확인 · 매출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확인
2단계	집계결과	【Macro Editing】 ○ 업종별 지수수준 분석 · 업종별 지수수준 분석 · 관련통계 비교분석 · 디스플레이 수준점검 【Micro Editing】 ○ 사업체별 분석 · 전년동월비/전월비 매출액 증감 사유 확인 · 잠정과 확정자료 간 변동이 큰 사업체의 확인 · 매출액과 상관성이 높은 영업일수, 특성항목 등 확인 ○ 지방청 질의 · 사업체 특이사항 질의
3단계	자료대체	【무응답 처리】 ○ 표본층 및 전수층 · 업종 증감률 적용 【이상치 처리】 ○ 비합리적 이상치 ·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오류항목 수정

3

서비스업
부문

2. 입력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1) 프로그램 설치

① H/W 권장사항

- O/S : 최소 Windows2000, Windows XP
- CPU : 최소 Pentium IV 1.6Hz이상
- Memory : 최소 256 MB RAM 이상
- Hard Disk : 500M 이상
- Display : 1024 x 768 모드

② S/W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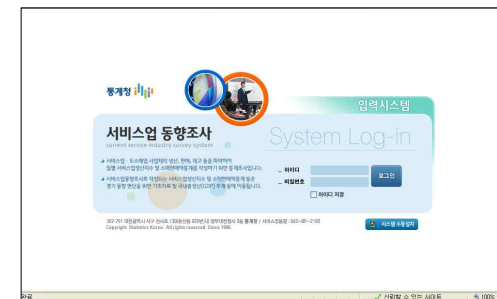
- Web Browser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상 권장

나. 조사담당자용 입력 프로그램

1) 입력시스템 개요

가) 접속 방법

- URL : <http://esaup.nso.go.kr/mss>
- 조사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홈페이지에 접속



나) 메뉴 개요

- 조사자, 담당자 및 총괄자별로 사용가능한 메뉴가 다르며, 명부배정, 사용자 관리는 조사자가 접근할 수 없음

기본메뉴	하위메뉴	세부 내용	권한여부		
			조사자	담당자	총괄자
기초자료	기초자료	산업분류, 사무소, 유고코드 매출액구분 조회	○	○	○
사업체관리	명부관리	명부 및 캐시 추가, 수정, 삭제	○	○	○
	담당자별사업체현황	담당자별 조사대상 사업체	○	○	○
	사무소별사업체현황	총 사업체수, 캐시 사업체수	○	○	○
	대체사업체관리	대체사업체 요청 및 승인	○	○	○
	사업체변경관리	사업체 명부 변경내역	○	○	○
	명부배정	조사자 변경	×	○	○
조사표관리	조사표입력 및 현황	조사표 입력	○	○	○
	잠정/확정물량	사업체별 잠정값 및 확정값	○	○	○
내검관리	오류사업체조회	오류항목 해당 사업체 조회	○	○	○
수준점검	금월 마스터생성	담당 조사표 확인 및 저장	○	○	○
	3개월 수준점검	사업체별 금년 및 전년 3개월 매출액	○	○	○
	담당자별 사업체 실적	담당사업체의 월별 매출액 전월비 또는 동월비 수준 확인	○	○	○
게시판	게시판	주요일정, 공지사항	○	○	○
사용자관리	사용자등록 및 수정	사용자 추가, 수정 및 삭제	×	○	○

3

서비스업 부문

2) 입력시스템 설명

가) 명부관리

- 명부 추가 및 수정을 하는 메뉴로 유고사업체 관리, CASI사업체 등록 및 관리, 당월에 추가한 사업체에 한해 명부 삭제 기능을 제공

(1) 명부 추가

- ① 화면상단의 지방청과 사무소를 확인 후 '명부추가'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팝업창이 나타남

- ② 서비스업동향과에서 부여받은 사업체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체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③ 유고코드 신규(03)로 저장

다) 조사표입력 및 현황

(1) 용도

- 조사표 입력 및 입력 현황 조회

(2)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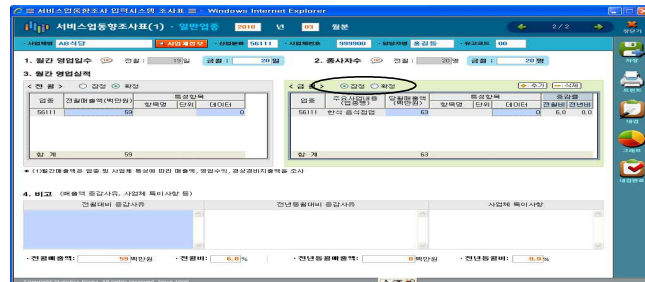
(가) 조사표 입력 현황

- 검색조건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 선택하여 사업체 입력여부를 확인(조사표 내검란로 시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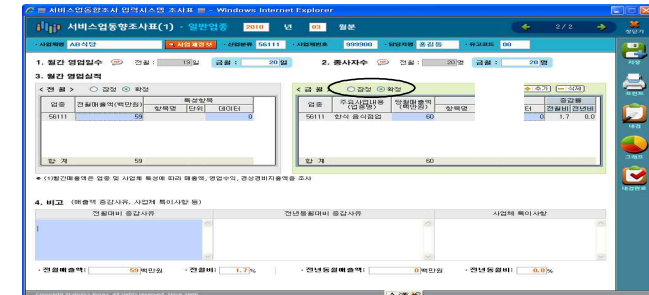
(나) 조사표 입력

- ① 금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금월 매출액 자료를 입력한 후, [잠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됨
 - 잠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추후 자료수정 후 확정치 표시가 가능하며,
 - 확정치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는 입력기간이 완료되면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정할 수 없음 (단, 금월 입력기간에는 자료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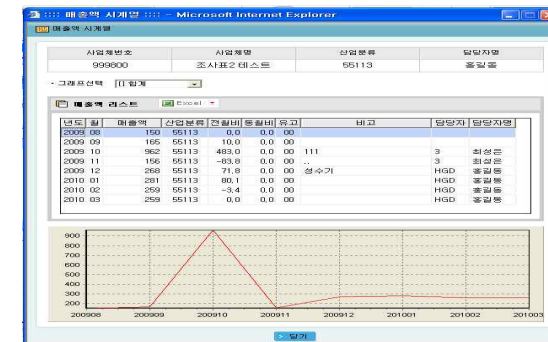


- ② 전월 자료가 잠정치인 경우 : 해당월 조사표로 이동한 후, 금월에서 확정 자료로 수정

- 전월 잠정치로 표시된 매출액 63가 확정치 60으로 수정 입력된 경우
- ※ 잠정치를 확정치로 수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잠정자료가 발생한 <금월>에서 수정(<전월>에서 수정하는 경우 오류발생)



- 조사표 상단의 '<구/>' 버튼으로 대상사업체 이동이 가능
- 조사표 우측의 '그래프' (Graph)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사업체의 매출액 시계열 그래프, 전월비, 동월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금월 조사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활용



- 내검()을 클릭하여 내검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내검 유형에 따라 수정 및 사유를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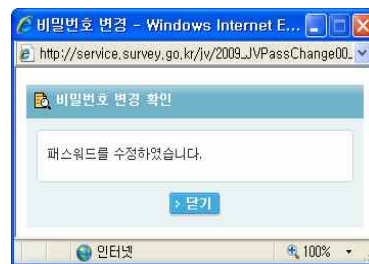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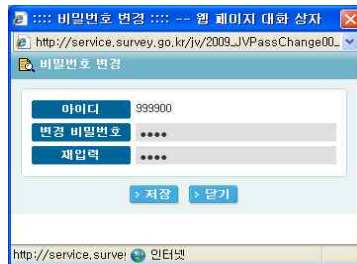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1)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 부문] 인터넷조사시스템 접속

- URL : <http://service.survey.go.kr>



-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CASI) 초기화면에서 조사담당자가 부여한ID와 비밀번호로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 부문] 로그인



- 초기 접속시 비밀번호 변경 후 재 로그인

3) 입력 및 저장화면

- 응답자는 조사표를 참고하여 1.월간 영업일수, 2.종사자수, 3.월간 영업실적, 4.비고 등을 작성
- 조사항목 작성 완료 후 우측 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전전월 및 전월의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수정하는 경우 상단의 [전월

조사표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전월 및 전월의 자료 수정. 단, 전월의 잠정자료는 금월조사표에서도 확정자료로 수정 가능



-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월의 조사표를 출력할 수 있음

Ⅲ. 서비스업 부문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0년 조사	2011년 조사
사업체관리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사업체 대체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계속조사 광역사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대체(생략)
	○ 산업분류 변경(08) · 표본층 : 산업분류 변경이 포괄범위 내 변경이면 계속조사, 포괄범위가 아니면 사업체 대체	○ 산업분류 변경(08) · 표본층 : 산업분류 변경이 포괄범위가 아니면 사업체 대체(변동코드 기타(14) 로 처리)
기타 사항	○ 입력시스템	○ 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수정 보완
	○ 조사 사례	○ 조사 사례 수정 보완

3

서비스업
부문

2.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개요

가. 의의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한 것임
- 경기 동향 파악, GDP 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연혁

- 1999. 1. : 통계작성 승인
- 1999. 1. ~ 2000. 1. : 시험조사 실시
- 2000. 2. : 본조사 실시
- 2000. 8. : **최초 공표**
- 2004. 3. : 2000년 기준 지수개편
- 2008. 3. : 2005년 기준 지수개편
- 2009. 3.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개정) 적용

다. 작성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상의 13개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 영상 ·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서
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R), 협회 ·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 대분류 E 중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

라. 기초자료

- 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및 2006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
- 표본구성
 - 전수조사
 - 업종별(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사업체수 10개 미만인 업종
 - 업종별(산업세세분류)별 전체의 사업체수가 11~30개 이하 업종 중 사업체의 평균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인 업종
 - 표본조사 : 전수층(종사자수 규모가 해당업종의 절사점 이상)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이용 : 공공기관, 관련협회, 공단(공사) 또는 감독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업종
예) 보험업(금융감독원), 의료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 「지수계열 및 자료수집기관」 참조

마. 분류체계

- 업종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총지수(1개), 대분류지수(13개), 중분류지수(36개), 소분류지수(84개) 등을 공표
- 특수분류지수
 - 유사한 업종끼리 재분류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환경, 물류, 스포츠, 문화서비스업지수 등 6개의 특수분류지수로 공표

바. 가중치

- 2005년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를 1000.00분비로 하여 가중치 산정
 - 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결과 및 운수업 통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작성

사. 지수 보는 방법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05=100)의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text{경상지수} = \frac{\text{월별로 조사한 매출액}}{\text{기준년도 월평균 매출액}} \times 100$$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작성 (가격변동분을 제거하여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text{불변지수} = \frac{\text{경상지수}}{\text{물가디플레이터}} \times 100$$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에서 계절변동요인(계절요인, 명절요인 및 영업일수)을 제거하여 순수 경기변동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작성

$$\text{계절조정지수} = \frac{\text{불변지수}}{\text{명절요인} \times \text{영업일수요인} \times \text{계절요인}} \times 100.0$$

- 전월(년)비 : 전월(년)과 비교한 금월(년)의 지수수준 변동률

$$\text{전월(년)비} = \frac{\text{금월(년)지수} - \text{전월(년)지수}}{\text{전월(년)지수}} \times 100$$

- 전년동월비 :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한 금월의 지수수준 변동률

$$\text{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지수} - \text{전년동월지수}}{\text{전년동월지수}} \times 100$$

3

서비스업
부문

- **전년누계비** : 금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지수수준(평균)을 전년 동기간 지수수준(평균)과 비교한 변동률(12월 전년누계비(1~12월 평균)는 연평균 변동률이 됨)

$$\text{전년누계비} = \frac{\text{금년동기간 평균지수} - \text{전년동기간 평균지수}}{\text{전년동기간 평균지수}} \times 100$$

아. 공표

- **익 월 말** :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 **익월초** : 『서비스업생산지수』 월보 발간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주제별통계 : 서비스업동향조사
 - 온라인간행물 : 서비스업생산지수월보

< 지수 계열 및 자료 수집 기관 >

업 종	지수 계열	자료수집 기관
자동차판매업 *	월간 수입자동차 판매액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차량용 연료소매업	월간 차량용 연료 판매액	한국석유공사
가정용 연료소매업	월간 가정용 연료 판매액	한국석유공사
철도운송업	월간 운수수입	한국철도공사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월간 영화관 입장권 판매액	영화진흥위원회
일반은행 *	월간 대출금 평균잔액, 영업수익	한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월간 대출금 말잔액	한국은행
투자기관	월간 대출금 말잔액, 간접상품잔액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월간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례수당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업	월간 영업수익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	월간 경과보험료수입	금융감독원
의료보험업	월간 보험료 수입(징수액, 결산기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융시장관리업	월간 영업수익	한국거래소
증권 및 선물중개업	월간 주식거래대금, 간접투자상품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중개업	월간 부동산 거래실적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초·중·고등학교	월간 경비지출액	시도 교육청
대학교 *	월간 경비지출액	기획재정부
병원업	월간 청구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업	월간 청구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주장운영업	월간 경마권, 경륜권, 경정권 판매액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운영업	월간 골프장 내장객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스템의 월간 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한국환경자원공사
상위 업종 이외의 서비스업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결산 자료), 경비지출액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 일부업종(*) 표본조사 병행

3

서비스업 부문

3. 주요 사례 별 처리 방법

일반적인 사항

1. 소규모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백만원 미만으로 조사되는 경우는?

- 백만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며, 반올림 후 0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특이사항에 실제 매출액을 기입함
(예 : 760,000원인 경우 → 1백만원으로 기입
350,000원인 경우 → 0백만원으로 기입하며, 특이사항에 매출액 35만원기입)

2. 여러 업종을 겸업할 경우 매출액의 조사방법은?

- 전수층 및 질사표본사업체인 경우 주사업 이외의 업종이 일정규모(30%)이상 이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하여 구분 조사
- 규모가 작은 경우나 부득이 회계처리 또는 경영관리상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산 조사(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
- 포괄산업분류내의 겸업인 경우는 합산하여 조사

3. 정부 및 지자체의 소속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사방법은?

- 소속기관의 사업소 중 월별 수입이 발생하여 매출액 조사가 가능한 예술회관, 공원관리, 도서관, 박물관 등과 지자체의 투자기관인 시설공단, 직속기관인 연구원, 교육원 등은 조사
- 제공서비스의 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인 경우(월별 수입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경비 수준)는 월별 수입으로 조사
- 하지만 무상 혹은 무상에 가깝게 제공되는 경우(해당 사업체의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는 경상경비지출액으로 조사

3

서비스업 부문

4. 사업내용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산업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 산업분류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크기에 의해 주산업을 결정하나, 가급적 기존의 산업분류를 유지

※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종합휴양업(조사표 2)으로 조사하는 업종은?

- 원칙적으로 휴양콘도운영업(55113)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종합휴양업(조사표 2)으로 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 p.534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산업분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철근콘크리트)을 수수료를 받고 파쇄한 후 매립용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철근을 재생재료 수집 판매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수수료를 받고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여 파쇄한 후 매립용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 38230(건설 폐기물 처리업)
- 수수료를 받고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여 파쇄한 후 블록, 타일 등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서 부가가치가 블록, 타일 등의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 :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 외

7. 몇 개의 사업체에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체로 상품보관을 위한 공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관상품의 배송대행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상품의 보관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보관물품의 운송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52101(일반 창고업)
- 상품의 운송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운송화물의 보관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4931(화물 자동차 운송업)

8. 콘도식 민박시설운영업인 펜션의 산업분류는?

-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로 분류함

9. 제과점의 산업분류는?

- 接客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빵 또는 과자를 직접 구워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6191(제과점업)
- 接客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56191(제과점업)

- 接客시설 없이 직접 조리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빵 또는 과자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47215(빵 및 과자류 소매업)

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의 차이점은?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정보 제공자의 콘텐츠를 검색하여 연결해 주는 역할 수행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직접 정보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

11. 상품판매 시 전화매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자기상품을 소매하는 경우 : 기타 통신 판매업(47919)
-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의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경우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12. 보험판매 시 전화매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보험모집 대리점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
-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의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경우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13. 장의사업의 산업분류는?

- 운송만하는 경우는 60233(장의차량운영업)
- 운송과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운송, 장의용품 취급 및 장례식장 운영은 96921(장례식장 및 장의업)으로 조사

3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관리

14. 표본사업체가 대체된 경우 사업체번호(사업체일련번호)가 '00'에서 '01'로 부여되고 있는데 연도가 바뀌는 경우 처리방법은?

- 연도의 변경과 관계없이 차기 개편까지 부여된 관리번호로 지속됨

15. 표본사업체 대체 시, 종사자수와 매출액의 유사여부를 감안하여 대체하고 있는데 종사자수와 매출액 중 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 매출액과 종사자규모 모두 유사한 규모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두 가지 모두 합당한 대체사업체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체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종사자수 관련 사항

16. 조사대상사업체의 종사자수에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종사자수가 포함되는지?

-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종사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17.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등의 종사자수에 대한 조사 방법은?

- 조사대상월의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도 종사자수로 조사

18. 조사대상사업체의 자원봉사자 수를 종사자수에 포함하는지?

- 종사자수에서 제외

☞ 자원봉사자의 예시 - 여름방학 동안 박물관 등에서 무급으로(차비와 점심 식사는 제공) 종사하는 대학생

19. 골프장의 캐디(게임보조요원)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골프장의 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종사자수에서 제외

20. 카드사의 카드 모집원(본사에서 기본급은 지급하고 계약에 다른 성과급 지급 받음, 개별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사에서는 종사자수로 보지 않음, 그 수가 수 백명에 달함) 및 프리랜서(해당 조사사업체에 거의 전속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의 경우 종사자수에 포함 되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종사자수에 포함

영업일수 관련 사항

21. 유치원의 방학기간 동안 영업일수의 조사방법은?

- 방학기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일수는 직원 근무일수를 조사

22. 직원근무일수와 고객사용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일수는?

- 직원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고객사용일수는 비고란에 기입
예) 기타스포츠서비스업, 경주장 운영업, 유아교육기관, 상설직원훈련기관, 전문강습소·일반강습소

23. 조사당월 휴무 없이 가동 중인 창고업의 영업일수는?

- 조사월의 전체일수를 영업일수로 기입
예) 아파트관리사무소, 유선방송업 등 서비스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

3

서비스업 부문

특성항목 관련 사항

24. 운송업 중 수송인원수 파악이 불가능한 업종의 조사방법은?

- 수송인원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25. 육상화물취급업의 경우 취급화물량 조사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처리는?

- 육상화물취급업의 취급화물량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상 및 항공화물취급업 등 조사가 가능한 업종에서만 조사

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특성항목의 파악이 불가능한 업종의 조사방법은?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중파 방송업, 도서관 등의 업종은 관람객수 또는 입장객수의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파악하여 조사

영업실적 관련 사항

27. 조사대상업체인 한식당에서 지역 내 축제기간(1주일) 동안 식당 문을 닫고 행사장에서 영업을 했다. 이 경우 행사장 영업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가?

- 행사장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특이사항 란에 기재

28. 호텔업의 부대시설 수입이 객실수입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으로 조사하는지?

- 호텔업의 음식점, 욕탕시설 등은 호텔업의 편의시설에 속하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호텔업으로 조사함

3

서비스업 부문

29.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의 매출액에 광고 수입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의 매출액은 영업수입(광고수입, 시청료 수입 등) 및 유선임대료 수입을 조사

30. 건물 임대업에서 월세와 전세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임대료 수입조사 방법은?

- 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수입에 포함 조사를 하며, 임대수입은 주거래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 조사
예) 월세 : 300만원, 전세 : 1억,
조사당월의 주거래은행의 정기예금금리 : 4.55%
→ 월임대료수입은 338만원(300만원 + (1억×0.0455/12개월))으로 조사

3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의 경우 전세금 및 보증금은 조사대상 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해당 지역 주거래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3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건설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등의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며,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자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

33. 건축설계업 등과 같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매출액을 조사하는 요령은?

- 특정 사업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월별 진척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진척률에 의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월별 수입금액을 조사함

34. 청소용역업체의 매출이 9~11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사업체에 확인해보니까, 작업은 매월 이루어지나 그 비용이 상대 업체로부터 매년 9~11월에 지연 입금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9~11월 매출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월의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단, 현실적으로 월별 조사가 어렵고, 기존에는 조사된 해당 월의 매출로 처리했다면 기존 방식대로 조사함.

35. 병설유치원과 같이 수업료는 모두 교육청에 납입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사방법은?

- 경상경비지출액을 매출액으로 조사

36. 연수원, 직원훈련기관 등의 경우 매출액은 경상경비집행액을 조사해야 하는데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 수입이 있을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 직원훈련기관의 매출액은 경상경비집행액(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만을 조사

37. 학원에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인원수도 중복하여 파악하는지?

- 여러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수강인원은 1인으로 산정하여 조사

38.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조사방법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시설로 집행되는 예산액만 조사하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은 제외

39. 국립공원의 매출액 조사요령은?

- 국립공원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입장료, 주차장수입, 시설임대수입 등)을 조사
※ 2007.1부터 입장료 폐지되어 입장료 부분 제외하고 조사. 차후 입장료 관련 정책 변경 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조사

40. 상조회사의 매출액 조사방법은?

-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아닌 실제 상조비로 지출된 금액 조사

41. 예식장의 경우 예식은 없이 부대시설의 수입만 발생한 경우에 매출액 조사방법은?

- 예식장에서 직영하는 부대시설 수입도 포함 조사하므로 예식은 없이 직영하는 부대시설의 수입만 발생한 경우도 매출액으로 조사하며, 단 면세점의 수입은 특이사항에 기재

3

서비스업
부문

4.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 포괄산업분류내 산업분류가 변경된 경우 계속 조사하며, 조사표입력시 반드시 변경된 산업분류를 입력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37 ~ 39)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 건축 폐기물 처리업
	4910 철도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H. 운수업(49 ~ 52)	49231 택시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1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11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2 항공 화물 운송업
	51101 항공 여객 운송업	52101 일반 창고업
	51102 항공 화물 운송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912 여객·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3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I.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5294 화물 취급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 일반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5612 기관구내식당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점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 기타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1 기타 음식점업(제과점)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2 기타 음식점업(패스트푸드 등)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 비알콜 음료업점	56220 비알콜 음료업점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6110 우편업	61100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6412 일반 은행	64121 국내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20 투자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91 여신금융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1 생명 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65303 연금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3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1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69291 서적 임대업
		69292 의류 임대업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치 임대업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103 법무사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721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10 고용 알선업 75120 인력 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8511 유아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11 초중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P. 교육 서비스업 (85)	8530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502 외국어 학원 85503 방문 교육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3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8562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620 예술 학원 85630 사회교육시설
	8564 직원훈련기관	85640 직원 훈련기관
	8565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51 운전 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91 컴퓨터 학원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610 병원	86101 종합 병원 86102 일반 병원 86103 치과 병원, 한방 병원
	8620 의원	86201 일반 의원 86202 치과 의원 86203 한의원
	8690 기타 보건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90 기타 보건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 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기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대분류	대표 업종	포괄 업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 캐블링 및 베팅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9411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9521 자동차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1 가전제품 수리업	
		95310 가전제품수리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11 미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2 마사지업
	9691 세탁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96991 예식장업

3

서비스업
부문

5. 서비스업동향조사표[1,2,3]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서비스업동향조사표(1)

- 일반업종 -

201 년 월분 (확정, 잠정)

·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② 종사자수

 명

③ 월간 영업실적

※산업분류	(1) 주요사업내용 (업종명)	(2) 월간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합 계									*****	***	*	*	*	*	*	*	*

※ 월간매출액은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매출액, 영업수익, 경상경비지출액을 조사

④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 월 대 비 증 감 사 유	전년동월대비 증 감 사 유	사 업 체 특 이 사 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 A X	
			E-mail	

통계청
STATISTICS KOREA

【조사표 작성 요령(일반업종)】

I.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는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담당자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

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1.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다도 영업일수에 포함

2. 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와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3. 월간 영업실적

(1) 주요사업내용

-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 서비스(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

(2) 월간매출액(영업수입액 또는 경상경비지출액)

- 매출액(영업수입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매출부가가치세액,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 경상경비지출액 :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건물 증·개축비,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을 제외한 경상비 지출액(인건비+임차료+세금과 공과+감가상각비+기타비용)

4.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

【참고】업종별 매출액 개념 및 특성항목

업종	매출액	특성항목	단위
·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업수입액(수수료)	하수 및 폐기물처리량(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업만 해당)	M/T
· 운수업	영업수입액(운송수수료)	수송인원수 취급화물량	명 M/T
·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입액, 매출액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총가입자수(전기통신업만 해당)	명
· 금융 및 보험업	신용카드업(수수료+이자), 금융(여신액), 보험(보험료수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업수입액(임대료, 수수료), 기성액(부동산공급업)	임대면적(부동산임대업만 해당) 차량보유대수(운송장비임대업만 해당)	m ² 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경상경비지출액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 교육서비스업	영업수입액, 운영비용 등		
· 중등, 고등교육기관	경상경비지출액		
· 학원	등록비, 수강비, 부대시설운영수입 등	수강인원수(학원만 해당)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업수입액(입장료)	관람자수 및 입장객수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영업수입액(수수료)	예식건수(예식장업만 해당)	건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서비스업동향조사표(2)

- 종합휴양업 -

201 년 월분 (확정, 잠정)

·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5 5 1 1 3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1. 월간 영업일수

 일

2. 종사자수

 명

3. 월간 영업실적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백만원)						(3) 업종별 특성항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항목명	※단위	십	만	천	백	십	일
① 숙박업 (551)	·호텔(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소 계(551)								*****	***	*	*	*	*	*	*
② 음식점업(561)																
③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91)	·골프장(91121)								입장객수	명						
	·스키장(91122)								입장객수	명						
	·유원지 및 테마파크 (91210)								입장객수	명						
	소 계(91)								*****	***	*	*	*	*	*	*
④ 기 타																
⑤ 합 계(①+ ②+ ③+ ④)									*****	***	*	*	*	*	*	*

※ 종합휴양업은 각 사업(업종)부문별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매출항목에 구분 기입

4.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FAX	
			E-mail	

통계청
STATISTICS KOREA

【조사표 작성 요령(종합휴양업용)】

I. 업종개요

-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제1종종합휴양업)과 관광숙박업 시설(제2종종합휴양업)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II.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는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 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

I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①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업 일수에 포함

② 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과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③ 월간 영업실적

- 종합휴양업은 숙박,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해당 업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부문별로 해당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입(매출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 종합휴양업(55113)

- 숙박업(551) :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 기타
- 음식점업(561)
-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91) : 골프장(91121), 스키장(91122), 유원지 및 테마파크(91210)
- 기타 : 도소매업 등

④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서비스업동향조사표(3)

- 사회 복지 서비스업 -

201 년 월분 (확정, 잠정)

·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 (국가지정통계 10150호) 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체명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8 7 1 1 1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

② 종사자수

명

③ 월간 매출액 (경상경비지출액)

(1) 산업분류		(2) 월간 매출액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거주 복지시설 (871)	·노인거주 복지시설(8711)							
	·심신장애인거주 복지시설(8712)							
	·기타 거주 복지시설(8713)							
	소 계(871)							
② 비거주 복지시설 (872)	·보육시설(8721)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8729)							
	소 계(872)							
③ 합 계 (①+②)								

④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 월 대 비 증 감 사 유	전년동월대비 증 감 사 유	사 업 체 특 이 사 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F A X	
			E-mail	

3

서비스업 부문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조사표 작성 요령(사회복지서비스업용)】

I. 업종개요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① 거주복지시설

- 노인거주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 신체장애인, 정신 질환자 및 약물남용자거주 복지시설
- 기타거주복지시설 : 아동 및 부녀자 보호, 부랑인 보호 시설 등

② 비거주복지시설

- 보육시설 :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 기타비거주복지시설 : 직업재활원, 봉사단체, 무료급식소 등

II. 일반적인 유의사항

○ 이 통계조사는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 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예 : 54,856천원인 경우 → 55백만원으로 기입)

I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

①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

② 종사자수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합한 총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점)의 경우는 본사(점)와 지사(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③ 월간 영업실적

○ 매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 또는 예산집행액

○ 사회복지서비스업(87) 매출액 개념

- 산업분류별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구로 월별 결산(보고)하는 경상경비집행액을 매출액으로 기입
⇒ 단, 월별 미결산(보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설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집행액(운영비)을 매출액으로 기입

④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동월에 비해 $\pm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증감사유란에 자세히 기입

3

서비스업 부문

Part 4 도소매업 부문

I.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02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105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08
4. 조사기록부 작성 114

II.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115
2. 입력 117
 - 가. 입력에 관한 일반사항 117
 - 나. 직원용 입력프로그램 117
 -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 125

III. 도소매업 부문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127
2. 소매판매액통계 작성개요 128
3.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31
4. 조사용어 해설 137
5.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140
6. 상품분류 기준 144
7. 소매업태별 분류 146
8. 서비스업동향조사표[4] 147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담당자는 담당사업체(또는 응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 매출액, 유고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기록부에 기입
- 신규 사업체는 서비스업동향조사표[4]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공업무에는 조사기록부만을 이용할 수 있음
- 상품판매액 및 재고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
 - 백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사사오입하여 기입
- 유고사업체 변동사항
 - 매월 15일까지 사업체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유고 유형별로 처리 참조
 - 휴업사업체는 매월 확인(판매액 '0'으로 입력)하며, 휴업상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서비스업동향과에 보고하여 조치

주 의 !

휴업 : 3개월 이상 장기 휴업발생시 즉시 대체
폐업 : 즉시 대체

- 산업분류 변경

구 분	처리방법	
	전수층	표본층
대표업종 내	계속조사	계속조사
대표업종 외	조사중지 (서비스업동향과에 보고)	즉시 대체

-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은 특정매입매장, 임대를 매장의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으로 작성해야 함

● 잠정자료 처리방법

- 분기결산 등으로 입력마감일(20일)까지 자료입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체의 경영실태 등을 응답자에게 문의한 후 기입(불가피한 경우: 전월보합 처리)
- ☞ 입력마감일(20일) 이후에 확정자료는 추가입력마감일(23일경)까지 수정 가능
- 각 지방청(사무소)의 총괄자(담당자)는 매월 잠정사업체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분기, 집계지연 등)

● 조사내용 검토

- 전월 및 전년동월 증감폭이 큰($\pm 20\%$ 이상) 사업체의 경우 변동사항을 응답자에게 문의한 후 기입

● CASI(응답자가 직접입력) 사업체는 3개월(분기)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 변동 현황 파악

2. 조서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가. 대상업종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45~47)

- 도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
-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산업 등은 제외(아래표 참조)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461	상품 중개업
468	상품 종합 도매업
4786	중고상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2) 도소매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지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본사는 도매업으로 분류
-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관리 지사 및 본사 등은 제외

도소매업이 아닌 업종

건설업 중 보일러공사업(가정용 보일러 설치), 실내장식공사업(도배 및 장판부착), 유리공사업(샤시설치), 조명공사업(조명장치설치)

3) 겸업 처리

- 도소매업과 타산업(제조, 건설, 운송, 서비스 등)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부문 부가가치가 큰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겸업사업체는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매출은 조사에서 제외

주 의 !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판매액은 제외

4

도소매업 부문

4)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

업종	정의
도매업	- 구입한 상품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단체 등에 주로 판매 - 일반적으로 상품이 진열되지 않음
소매업	-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 -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은 조사 편의상, 자동차판매업(451)은 소매업으로 조사하고, 자동차부품판매업(452), 모터사이클판매업(453)은 도매업으로 조사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판매액 비중이 큰 업종으로 포함 조사
예) 소매매출이 8백만원, 도매매출이 2백만원인 경우 소매업의 상품판매액에 천만원을 기입

5) 대표업종과 산업분류

- 대표업종은 서비스업동향 통계작성을 위한 최하위 단위로서 유사한 산업 분류를 묶은 대표업종을 선정
 -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체대체, 자료처리 및 공표
- 도매업은 대표업종 16개로 구성
 - 자동차부품 및 이륜차판매업(GA20),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GB20) ~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GB72)
- 소매업은 대표업종 27개로 구성
 - 자동차 판매업(GA10), 백화점(GC111) ~ 기타 무점포판매(GC92)

4

도소매업 부문

나. 대상 사업체

1) 표본으로 선정된 4,000여개 사업체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출입이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곳)
- 입장료를 내는 시설(영화관, 운동장, 기차역내,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매점, 공항 면세점
-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상점

2) 조사단위

- 사업체(매장, 점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조사의 경우 기업단위 조사
 - 장소, 대표자, 회계장부가 각각 다른 경우 다른 사업체로 간주하여 처리

3) 전수층과 표본층

- 조사대상 사업체는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
 - 전수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1, 2, 3, 9인 사업체
 - 1 ~ : 백화점, 대형마트
 - 2 ~ 3 : 종사자수 50인 이상(무점포판매업 100인 이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전문점, 표본조사 업종 중 종사자수가 절사점이상
 - 9 ~ : 본사조사(자동차신품 판매업, 체인화판의점 등)
 - 표본층 : 사업체 일련번호 첫 자리가 4, 5, 6인 사업체
- 전수조사 업종은 해당업종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며, 전수층으로 구성
 - 백화점(GC111), 대형마트(GC119), 체인화판의점(GC122), 자동차신품 판매업(GA10의 일부)
- 표본조사 업종은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업종

업종	자료형태	대상기관
자동차신품판매업(GA10의 일부)	수입자동차 판매액	수입자동차협회
차량용연료 판매업(GC71)	차량 및 연료 판매량	한국석유공사
가정용연료 판매업(GC72)	가정 연료 판매량	한국석유공사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체 기본항목

사업체명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사업체명

- 간판에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간판에 있는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 이름과 다른 경우 「사업체 특이사항」란에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지사(점)인 경우 구체적인 지사(점)까지 기입
(예 : 샘머리 둔산점 → 샘머리자동차(주) 둔산지점)
- 사업체명의 공식명칭이 영어인 경우 그대로 기입
(예 : 케이티(주)(X) → KT(주)(0))

● 행정구역 분류부호

- 「행정구역분류부호표」를 참조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코드 7자리까지 기입

● 산업분류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 부호를 세세분류(5자리)까지 기입

● 사업체 일련번호 : ①②③④⑤⑥

- 앞의 4자리는 사업체 명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뒤의 2자리는 유고가 발생할 경우 -00, -01, -02...순으로 대체 번호 부여됨

● 사업체 고유번호 : 행정자료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지방에서 부여하지 않음)

● 담당자 ID : 조사담당자 ID를 정확하게 기입

나.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① 월간 영업일수 일

- 조사 대상 월 중 실제로 영업한 일수 기입
 -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일수에 포함
- 판매액에 영향을 주는 영업일수 증감사유는 반드시 「사업체특이사항」란에 기입
- 무점포 소매업 중 통신 판매업(4791)은 해당 사이트 혹은 전화가 운영되지 못한 경우에만 영업일수에서 제외

② 월말 종사자수 명

- 매월 말일 기준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수를 기입
- 본사조사 시 지사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기입
(단, 종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999'로 기입)
-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를 합하여 기입하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파견근로자, 용역직원)는 종사자수에서 제외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③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 임금 또는 급여를 받으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⑤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없이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 (예) 카달러, 방문판매원 등

4

도소매업 부문

다음의 경우 종사자수에서 제외

-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군복무자, 하청업체 종사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도급계약(용역)에 의해 파견 받은 자

③ 매장면적(소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기입) m²

- 소매업(자동차판매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작성하되, 조사단위는 m²임 (1평 = 3.3m²로 환산하여 기입)
- 사업체가 상품판매 목적으로 임차한 면적은 포함하되 임대해 준 면적은 제외

매장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품판매를 위한 진열장, 벽이 없는 연결 통로 등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편의시설 등

*대형소매점 매장면적 = 직영매장 + 특정매입매장 + 임차매장

- 매장면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999'로 기입

④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사업체의 주된 산업분류에 따라 도매업은 ④-1 도매업만 기입하고, 소매업은 ④-2 소매업의 상품 판매액을 기입
- 자동차판매업(451)인 경우에는 조사표 뒷장의 「조사표 작성 요령」 참조

④-1. 도매업 (단위: 백만원)

총 판매액	수출액	국내판매액

④-2. 소매업 (단위: 백만원)

(「직영」, 「특정매입」, 「임대」 매장의 상품판매액을 포함하여 기입)

내구재	판매액	준내구재	판매액	비내구재	판매액
11. 가전제품		21. 의복		31. 음식료품	
12. 통신기기		22. 신발		32. 의약품	
13. 컴퓨터		23. 가방		33. 화장품	
14. 가구		24. 운동, 오락		34. 서적, 문구	
15. 승용차		29. 기타		39. 기타	
16. 상용차					
19. 기타					

4

도소매업 부문

- 도매업의 수출액은 자기명의로의 수출과 위탁수출을 포함하여 기입
- 조사 대상월에 판매한 모든 상품 판매액(현금, 외상 및 할부)을 기입
- 부가가치세액(VAT)은 상품판매액에서 제외
-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등은 수수료가 아닌 상품판매액을 조사

〈사업체 유형별 판매액 처리방법〉(서비스업동향과 협의 후 처리)

① 분기 결산 사업체

- 지난 3개월 월평균판매액 또는 전분기 판매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입력

② 반품 발생 사업체

- 반품이 들어올 경우 당월에 반품액을 전부 차감 처리하지 말고 연간보정시 처리

● 대형소매점 매장유형 및 조사범위

-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은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 외형상 구분할 수 없으므로 직영, 특정매입, 임대 여부를 응답자에게 확인한 후 조사
- 대형소매점은 특정매입매장, 임대를 매장의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액으로 작성

<대형소매점 매장유형별 판매액 및 재고액 조사범위>

운영형태	매장유형	정 의	조사범위	
			판매액	재고액
대형소매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	직영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재고 등 경영관리가 대형소매점 측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짐	○	○
	특정매입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 상품의 재고, 판매 등을 대형소매점에서 관리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음	○	○
대형소매점의 임대매장	임대(을)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준 매장으로 판매관리는 대형소매점에서 이루어지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은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운영	○	×
	임대(갑)	정액임대금을 받고 임대해준 매장으로 물품의 판매, 구매, 재고관리 등이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이루어짐	×	×

II. 내용검토 및 입력

1. 내용검토

- 조사담당자는 조사된 자료를 입력 또는 보고하기 전에 내용검토
- 조사담당자 이외에 다른 조사담당자 또는 조사팀장이 추가로 내검 실시
- 조사담당자는 내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표에 증감사유를 상세히 기입

가. 현장조사 및 입력부문

1) 담당자 : 조사담당자

2)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조사표 작성	○ 사업체 변동사항 확인 · 사업체명 · 소재지 변경, 휴 · 폐업, 겸업 등 확인 · 산업분류 변경/분류착오 여부 확인 ○ 조사항목 누락점검 · 영업일수, 종사자수, 상품판매액 등 누락여부 확인
2단계	자료입력	○ 유효 응답값 여부 확인 · 조사항목 정확성 확인 ○ 상품군별 증감사유 확인 · 판매액 전월/전년동월비 $\pm 20\%$ 이상인 경우 사유입력 ○ 잠정 및 확정자료 여부 확인
3단계	자료입력 후	○ 판매액 및 재고액 시계열 검토 ○ 수준점검 및 관련항목 점검 · 사업체의 상품판매액 3개월 수준점검 · 영업일수, 종사자수, 매장면적 등 검토

4

도소매업 부문

나. 본청 자료처리 부문

1) 담당자 : 본청 담당자

2) 단계별 검토사항

1단계	자료집계	○ 사업체 변동사항 확인 · 대체사업체 적정성(판매액, 종사자수 등) 검토 · 유고사업체 변동사항(신규/폐업 등) 확인 ○ 입력사항 확인 · 판매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 확인
2단계	집계결과	【Macro Editing】 ○ 업종별 지수수준 분석 · 업종별 지수수준 분석 · 관련통계 비교분석 · 디플레이터 수준점검 【Micro Editing】 ○ 사업체별 분석 · 전월비/전년동월비 판매액 증감 사유 확인 · 잠정 및 확정간 변동이 큰 사업체 확인 · 판매액과 상관성이 높은 영업일수, 특이사항 등 확인 ○ 지방청 질의 · 사업체 특이사항 질의
3단계	자료대체	【무응답 처리】 ○ 표본층 및 전수층 · 업종 증감률(imputation) 적용 【이상치 처리】 ○ 비합리적 이상치 ·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오류항목 수정 ○ 합리적 이상치 · 대상 : 해당업종의 일반적인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 처리 : 조사담당자에게 확인

2. 입력

가. 입력에 관한 일반 사항

1) 프로그램 설치

① H/W 권장사항

- O/S : 최소 Windows2000, Windows XP
- CPU : 최소 Pentium IV 1.6Hz이상
- Memory : 최소 256 MB RAM 이상
- Hard Disk : 500M 이상
- Display : 1024 x 768 모드

② S/W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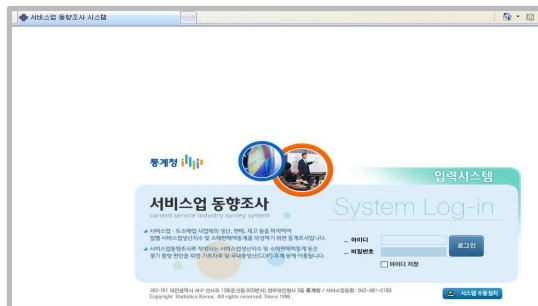
- Web Browser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상 권장

나. 조사담당자용 입력 프로그램

1) 입력시스템 개요

가) 접속 방법

- URL : <http://esaup.nso.go.kr/mss>
- 신규 조사자는 지방청 총괄자 및 담당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고 홈페이지에 접속



4

도소매업 부문

나) 메뉴 개요

조사자, 담당자 및 총괄자별로 사용가능한 메뉴가 다르며, 명부배정, 수준 점검, 사용자관리는 조사자가 접근할 수 없음

기본메뉴	하위메뉴	세부 내용	권한여부		
			조사자	담당자	총괄자
기초자료	기초자료	산업분류, 사무소, 유고코드, 상품군 코드 조회	○	○	○
사업체관리	명부관리	명부 및 캐시 추가, 수정, 삭제	○	○	○
	담당자별사업체현황	담당자별 조사대상 사업체	○	○	○
	사무소별사업체현황	총 사업체수, 캐시 사업체수	○	○	○
	변동코드별사업체현황	유고코드 및 유형별 사업체수	○	○	○
	대체사업체관리	대체사업체 요청 및 승인	○	○	○
	사업체변경관리	사업체 명부 변경내역	○	○	○
	명부배정	조사자 변경	×	○	○
조사표관리	조사표입력 및 현황	조사표 입력	○	○	○
	잠정/확정물량	사업체별 잠정값 및 확정값	○	○	○
내검관리	오류사업체조회	오류항목 해당 사업체 조회	○	○	○
수준점검	금월 마스터생성	조사표 전체 확인 및 저장	×	○	○
	상품군별 조회	사업체 상품별 판매액 및 증감률	×	○	○
	지역별 자료취합	16개 시도별 업종별 판매액 합계	×	○	○
	3개월 수준점검	사업체별 금년 및 전년 3개월 판매액	×	○	○
게시판	게시판	주요일정, 공지사항	○	○	○
사용자관리	사용자등록 및 수정	사용자 추가, 수정 및 삭제	×	○	○
	작업지시	캐시 입력 저장 관리	×	×	○

2) 입력시스템 설명

가) 명부관리

(1) 용도

- 명부 추가 및 수정
- 당월에 추가한 명부에 한해 삭제 가능
- 유고발생 사업체 관리
- CASI(응답자가 직접 입력) 사업체 등록 및 수정

(2) 명부 추가

- ① 화면상단의 지방청과 사무소를 확인 후 '명부추가'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팝업창이 나타남

- ②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 부여받은 사업체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체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 ③ 유고코드 신규(03)를 선택후 저장

(3) 명부 수정

- ① 명부리스트에서 해당사업체를 선택(더블클릭 또는 상세보기)

- ② 주소, 행정구역, 응답자 등의 변경은 해당부분 수정 후 '저장'
- ③ 사업체명 변경은 유고코드(명칭변경(04)) 선택 후 '저장'

(4) 유고코드 처리

- ① 전입·전출(01, 02)

- 사무소간 전입·전출은 전출 관할 사무소 조사담당자가 유고코드(전출(02))로 부여하고, '사무소' 및 '조사담당자' 지정 후 저장

- 전입 관할 사무소는 유고코드(전입(01))로 변경하고, '조사담당자'를 지정 후 저장

4

도소매업 부문



명부상세보기

• 명부를 수정합니다.

• 조사년도: 2009 • 조사월: 03 • 사업체번호: 399800 •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명: 테스트 • 산업분류: [45120] 중공업 • 사무소: [02] 동계일 • 담당자: [01] 문성
 • 기존주소: 대원빌딩 1층 10호 • 사업체명: [45120] 중공업 • 사무소: [02] 동계일 • 담당자: [01] 문성
 • 행정구역: 2503099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반: • 통: • 방: • 빌딩명: • 층: • 호:
 • 판매역 담당자: 부서: 관리부 • 성명: 관리자 • 기혼전화: 02-1234-5678 • 전화번호: •
 • 재고역 담당자: 부서: 관리부 • 성명: 관리자 • 기혼전화: 02-1234-5678 • 전화번호: •
 • 유고번호: 2009 • 유고월: 10 • 유고코드: [01] 전입 • 승인유형유고:
 • URL: • E-mail:
 • 업종분류: GA10

1/1

저장 닫기

② 미대체 유고코드(06, 07, 09)

- 유고코드가 포괄범위내변경(06), 규모변경(07), 상품군변동(09)인 경우 해당 유고코드를 선택한 후 저장
- 대체사업체관리에서 기타사항란에 반드시 사유 입력

③ 대체사업체 유고코드(13, 14, 15)

- 표본층 사업체 유고코드가 폐업(13), 기타(14), 응답불응(15)인 경우 해당유고코드를 선택한 후 저장시 아래 화면처럼 팝업창이 나타남



‘확인’을 클릭하면 ‘대체사업체추가’ 화면이 나타나고, 대체사업체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대체사업체 추가

• 대체사업체를 추가 합니다.

• 조사년도: 2010 • 조사월: 03 • 사업체번호: 581203 •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명: • 산업분류: [47312] 통신기 • 사무소: [AB] 인천시청 • 담당자: [A] 박준
 • 기존주소:
 • 행정구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반: • 통: • 방: • 빌딩명: • 층: • 호:
 • 판매역 담당자: 부서: • 성명: • 기혼전화: • 전화번호: •
 • 재고역 담당자: 부서: • 성명: • 기혼전화: • 전화번호: •
 • 유고번호: 2010 • 유고월: 03 • 유고코드: [05] 사업체대 •
 • URL: • E-mail:
 • 업종분류: GC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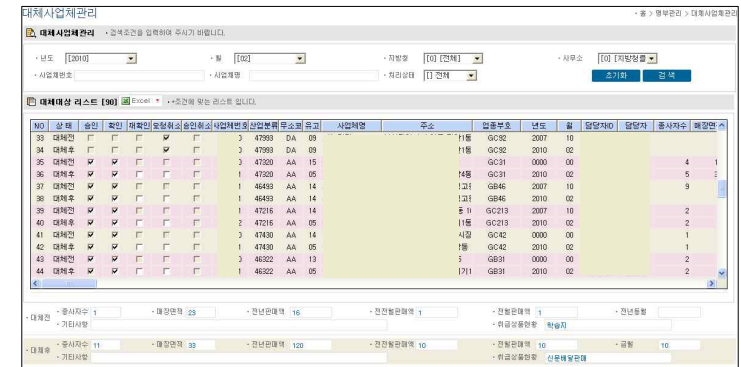
저장 닫기

단, 기존 사업체의 금월 조사표를 입력한 경우 대체할 수 없음(서비스업 동향과에 문의 후 처리)

나) 대체사업체 관리

(1) 용도

조사담당자가 명부수정시 승인이 필요한 유고코드를 입력한 경우, 승인처리 과정 조회 및 기존, 대체사업체의 정보를 입력



대체사업체관리

•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년도: [2010] • 월: [02] • 차월: [01] 현재 • 사무소: [01] 지방청
 • 사업체번호: • 사업체명: • 차월상태: [1] 현재

대체대상 리스트 [00] GC01 • *+조건에 맞는 리스트입니다.

NO	상태	승인	확인	재확인	호출	승인	호출	사업체명	주소	업종분류	년도	월	입력자	입력일	통사자수	제정일
33	대체전	✓	✓	✓	✓	3	47983	DA	09	11월	GC32	2007	10			
34	대체전	✓	✓	✓	✓	3	47983	DA	09	11월	GC32	2010	02			
35	대체전	✓	✓	✓	✓	3	47320	AA	15	06-21	0000	00			4	1
36	대체전	✓	✓	✓	✓	1	47320	AA	05	14월	GC31	2010	02		5	2
37	대체전	✓	✓	✓	✓	1	46489	AA	14	12-1	GC46	2007	10		9	
38	대체전	✓	✓	✓	✓	1	46489	AA	14	12-1	GC46	2010	02			
39	대체전	✓	✓	✓	✓	1	47216	AA	14	5-9	GC213	2007	10		2	
40	대체전	✓	✓	✓	✓	2	47216	AA	05	11월	GC213	2010	02		2	
41	대체전	✓	✓	✓	✓	3	47430	AA	14	시청	GC42	0000	00		1	
42	대체전	✓	✓	✓	✓	1	47430	AA	05	11월	GC42	2010	02		1	
43	대체전	✓	✓	✓	✓	3	46322	AA	13	5	GC31	0000	00		2	
44	대체전	✓	✓	✓	✓	1	46322	AA	05	17-1	GC31	2010	02		2	

대체전: 11, 폐업: 33, 전년도대: 120, 전년도대: 10, 전년도대: 10, 전년도대: 10

(2) 사용법

- 대체대상리스트 항목 설명

‘승인’: 최종승인 단계로 표본과에서 승인

‘확인’: 서비스업동향과에서 1차 확인

‘재확인’: 본청에서 사업체 대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 관리방법에 따라 사업체 다시 대체

‘요청취소’: 대체사업체 요청을 취소할 경우(대체전 기존사업체로 복귀)에 사용하며, ‘확인’ 또는 ‘승인’ 이전에 조사담당자가 선택 가능

‘승인취소’: ‘승인’ 후 승인을 취소할 경우(서비스업동향과에 문의)

다) 조사표입력 및 현황

(1) 용도

조사표 입력 및 입력 현황 조회

(2) 사용법

(가) 조사표 입력 현황

- 검색조건 선택한 후 검색시 사업체 입력여부를 확인(조사표 내검란표시 핑크색)

(나) 조사표 입력

- ① 사업체 더블클릭하면 입력화면이 나타남.
- ② 엔터키(Enter) 또는 탭키(Tab)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
- ③ 전월비 또는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큰 경우 증감사유란에 항목별로 사유 입력
 - 빨간색(제고액, 총판매액)과 연두색(상품군)으로 증감을 표시

- 금월 자료가 잠정인 경우, [잠정]란에 표시한 후 [저장]

- 잠정 및 확정자료는 입력기간동안 수정가능
- 수정이 필요한 전월 확정자료는 서비스업동향과에 문의
- 조사표 상단의 '↔' 버튼으로 사업체 이동이 가능
- 그래프(📊)를 클릭하여 사업체의 매출액 시계열 그래프, 전월비, 전년 동월비 확인(금월 조사의 정확성 여부 검토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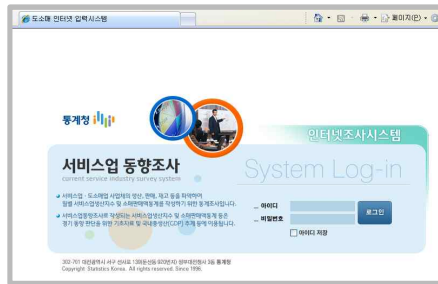
- 내검(🔍)을 클릭하여 내검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내검 유형에 따라 수정 및 사유를 입력



다. 응답자용 입력프로그램(CASI)

1) 서비스업동향조사[도소매업 부문] 인터넷조사시스템 접속

- URL : <http://retail.surve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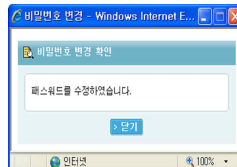


2) 로그인

- 서비스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CASI) 초기화면에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서비스업동향조사[도소매업 부문] 로그인



- 초기 접속시 비밀번호는 1111
- 초기 접속시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



3) 입력 및 저장화면

- 응답자는 조사표를 참고하여 1.월간 영업일수, 2.월말 종사자수, 3.매장면적, 4.월말 상품재고액, 5.월간 상품판매액, 6.비고 등을 순서대로 작성
- 조사항목 작성 완료 후 우측 상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전월 잠정 및 확정자료는 금월 조사표 또는 '전월조사표보기'를 클릭하여 전월조사표에서 수정가능



-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월의 조사표를 출력할 수 있음

4

도소매업 부문

Ⅲ. 도소매업 부문 부록

1. 지침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0년 조사	2011년 조사
사업체 관리	- 표본산출방법 · 도소매업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전문점	- 표본산출방법 · 도소매업 :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소매점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사업체 대체	- 전입(01) · 전출(02) · 표본층 : 계속조사 광역시·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생략)
조사(세부)항목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 폐업, 응답불응, 기타등의 유고사업체 보고 : 부서장에게 보고 후 서비스업동향과 에 메모보고 실시	2010년 주요 개정 내용 · 폐업, 응답불응, 기타등의 유고사업체 보고 : 유형에 따라 부서장(기관장)에게 보고 후 메모 보고 또는 서비스업동향과 문의
기타 사항	입력시스템	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수정 보완
	조사 사례	조사 사례 수정 보완

4

도소매업 부문

2. 소매 판매액통계 작성개요

가. 의의

소매 판매액통계는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서 상품군별, 소매업태별, 16개 시·도별(대형소매점에 한정) 등으로 구분·작성

나. 연혁

작성시기	조사명	작성통계	비 고
1965. 1.	소매동태조사	서울 소매 판매액지수	서울의 소매업만 조사(작성기관 : 한국은행)
1970. 11.	도소매업동태조사	서울 도소매 판매액지수	서울의 도매업 추가(작성기관 : 조사통계국)
1982. 1.	"	전국 도소매 판매액지수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0123호
1998. 1.	"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소매업태별 지수 추가
1999. 11.	도소매업동태조사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지정통계로 전환
2000. 5.	"	"	소비재지수 추가
2008. 3.	서비스업 동태조사	"	2005년 기준 지수부터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서비스업 생산지수(도소매업)로 일원화 ※ 서비스업동태조사로 통합(승인번호 제10150호)
2008. 3.	"	소매판매액통계	2005년 1월부터 소급 작성
2008. 11.	서비스업 동향조사	"	조사 명칭변경(동태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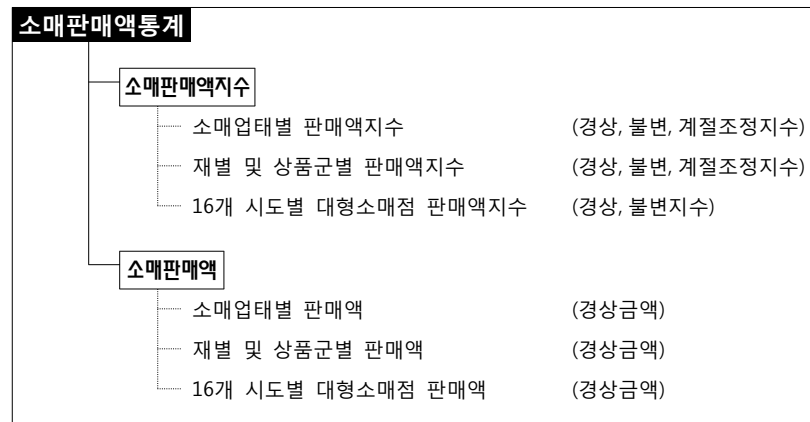
다. 포괄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자동차 판매업(451) 중 승용차』 및 『소매업(47)』
 - 단, 『소매업(47)』 중 중고품 소매업(4786),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4792),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9)은 제외

라. 기초자료 수집

- 모집단 : 2005년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 표본구성
 - 전수조사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자동차 신품 판매업
 - 표본조사 업종 : 전수층(종사자수, 매출액이 절사점 이상)과 표본층으로 구성
 - 행정자료이용 업종 : 수입자동차(수입자동차협회), 연료(한국석유공사)
- 전체 표본수 : 약 2,500개

마. 분류체계



바. 지수 보는 방법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상품판매액을 기준년도(2005=100)의 월평균 상품판매액으로 나누어 작성

$$\text{경상지수} = \frac{\text{월별로 조사한 상품판매액}}{\text{기준년도 월평균 상품판매액}} \times 100$$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작성(가격변동분을 제거하여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text{불변지수} = \frac{\text{경상지수}}{\text{물가디플레이터}} \times 100$$

- 계절조정지수 : 불변지수에서 계절변동요인(계절요인, 명절요인 및 영업일수)을 제거하여 순수 경기변동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작성

$$\text{계절조정지수} = \frac{\text{불변지수}}{\text{명절요인} \times \text{영업일수요인} \times \text{계절요인}} \times 100.0$$

- 전월(년)비 : 전월(년)과 비교한 금월(년)의 지수수준 변동률

$$\text{전월(년)비} = \frac{\text{금월(년)지수} - \text{전월(년)지수}}{\text{전월(년)지수}} \times 100$$

- 전년동월비 :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한 금월의 지수수준 변동률

$$\text{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지수} - \text{전년동월지수}}{\text{전년동월지수}} \times 100$$

- 전년누계비 : 금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지수수준(평균)을 전년 동기간 지수수준(평균)과 비교한 변동률

$$\text{전년누계비} = \frac{\text{금년동기간 평균지수} - \text{전년동기간 평균지수}}{\text{전년동기간 평균지수}} \times 100$$

- 12월 전년누계비(1~12월 평균)는 연평균 변동률이 됨

사. 공표

- 익 월 말 :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 익익월초 : 『소매판매액통계』 월보 발간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및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3. 주요 사례 별 처리 방법

가. 사업체 관리

사업체 대체

1. 도소매업 사업체 대체 시 고려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판매액 및 종사자수가 유사해야 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상품군 구성도 유사해야 합니다.

유고코드

2. 유고코드 중 [14. 기타]의 예를 들어주세요.

- 대표업종의 포괄산업분류를 벗어난 사업체(대상외), 현 소재지를 떠나 이전한 위치를 몰라 조사가 불가능(소재불명)한 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3. 사업체 폐업, 휴업,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판매액은 어떻게 기입합니까?

- 폐업, 소재불명은 사업체 대체를 하고, 휴업은 2개월까지는 0으로 처리하고 3개월째 폐업처리 및 사업체 대체를 합니다. 단, 휴업이 장기화되는 사업체는 휴업발생 3개월 이내에 대체하셔야 합니다.

4. 폐업(13), 기타(14), 응답불응(15) 등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체 처리 방법은?

- 표본층 사업체가 폐업(13), 기타(14), 응답불응(15) 등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로 대체하고, 전수층은 조사중지합니다. 단, 전수층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업동향과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체관리

5. 과거에는 A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서 영업활동 변화에 따라 B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변경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군 변동으로 인해 사업체 대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업종내 일지라도 상품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 대체를 해야합니다.

나. 조사항목

상품판매액

6. 도소매업 사업체 판매액에는 상품판매액 뿐만 아니라 기타 서비스 매출액도 포함되나요?

- 서비스 매출액은 제외되며,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조사에서는 결산기준이므로 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7. 도소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음식, 수리, 택배, 예약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8. 상품판매액, 매출액, 결산서 매출액 등의 차이점은?

- 상품판매액 : 직영매장 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상품매출액
- 매출액 : 직영매장 상품매출액+수수료매장의 수수료+기타 매출액 (서비스매출액, 제조매출액 등)
- 결산서 매출액 : 매출액을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한 금액

9.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사업체일 경우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까지 혼합되어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기기(핸드폰)대리점은 소매업체로 분류합니다. 소매업체로 조사시 수리판매액은 제외합니다.

월말 상품재고액

10. 재고액은 구입원가로 조사해야 하나 사업체 구조 및 기타사유로 판매가로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구입원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가로 조사(판매가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1. 재고조사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소매부문 상품으로 사업체내 창고, 물류창고(자사 또는 타사), 대형소매점 매장 등에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공장 창고에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겸업처리

12. 도소매업의 다른 업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주된 활동의 업종으로 조사하며, 다른 업종의 판매액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예를들어 소매업체가 일부 도매활동을 겸업할 경우 도매 판매액을 소매판매액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13. 도소매업이 외의 타산업과 겸업인 경우는?

- 조사대상 사업체가 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에 한해 상품판매액만 조사하고 기타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14. 건설업과 겸업인 경우 처리방법은?

- 벽지도배, 장판부착, 보일러 설치 등 판매와 공사가 결합되는 경우, 상품판매액만을 조사합니다.

대형소매점 매장구분

15.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 직영매장은 대형소매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자기직원이 판매하며,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하자가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특정매입매장은 대형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는 납품업자가 하고, 재고 반품이 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16. 특정매입매장의 재고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이 납품업자에게 구입한 상품을 팔다 남은 것입니다. 회계상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대형소매점에 속한 것이므로, 대형소매점 재고로 조사합니다. 다만, 특정매입매장 재고는 반품이 자유로우므로 직영매장 재고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17. 특정매입과 판매분매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특정매입 : 대형소매점이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므로, 일반적으로 재고가 발생합니다.
- 판매분 매입 : 대형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대형소매점이 그 물건을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형태이므로, 재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8. 특정매입매장과 임대매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두 매장 모두 수수료 매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특정매입매장은 대형소매점이 상품을 구입하고(보통 외상구매), 판매 완료

후 납품업자에게 상품구입액을 돌려줍니다. 특정매입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총매출액에 포함되며, 구입액은 특정매입원가로 표시됩니다.

- 임대유통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냅니다. 대형소매점은 임차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임대유통매장의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고, 판매완료후 일정기간내에 수수료(즉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점업체에게 돌려줍니다. 임대유통매장의 판매액은 대형소매점의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만 용역매출에 포함됩니다.

19. 대형소매점 재고액 중 임대유통매장의 재고액이 포함되나요?

- 대형소매점에 임대유통매장의 재고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20. 임대유통매장과 임대갑매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임대를 매장은 입점업체가 임차료를 상품판매액의 비율만큼 제공합니다.
- 임대갑 매장은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정액을 임차료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은 임대갑매장의 상품판매액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갑 매장의 상품판매액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매장면적

21. 매장면적 조사시 포함하는 매장면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차매장은 포함되나, 임대매장은 제외합니다.

22. 창고도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 창고는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면적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포함됩니다.

4

도소매업 부문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

식당,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주차장, 상품반입장, 종업원 이용시설, 소비자편익시설 등

23.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직영매장(수수료매장 포함) 면적이 3,0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형소매점 허가가 유지되는 경우 계속 조사합니다.

기타

24.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 중 하루에 1시간(일부분, 일정시간) 영업을 했다면 영업일수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영업활동을 했다면 영업일수에 포함합니다.

25. 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매월말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수를 기입하며, 타사업체에서 받은 종사자(파견근로자, 용역직원, 판매점원)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사용어 해설

소매판매액통계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서 상품군별, 소매업태별,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에 한정) 등으로 구분·작성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경상금액지수

월별로 조사한 상품판매액을 기준년도(2005=100)의 월평균 상품판매액으로 나누어 작성

불변금액지수

경상금액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가격변동분을 제거하여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계절조정지수

계절 변동에 의한 요인을 제거한 지수(순수 경기변동 측면에서 파악)

상품군별

소매상품을 승용차, 가전제품, 의복 등 13개 상품군으로 분류

재별

소매상품을 사용기간과 가격의 고저에 따라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으로 분류

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고가인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 가구 등의 상품

준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인 의복, 신발 및 가방, 운동 및 오락용품 등의 상품

비내구재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서적 및 문구, 차량연료 등의 상품

기타상품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12개 상품군을 제외한 상품

백화점

다수의 매장으로 구축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 각 매장마다 전용판매원이 고정 배치되고 매장별로 직접매매 및 계산활동 수행
[매장면적 3,000㎡ 이상, 47111(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
[매장면적 3,000㎡ 미만, 47121(슈퍼마켓), 47129(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90(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편의점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소매)하는 소매점[47122(체인화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451(자동차판매업 중 승용차), 47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478(기타 상품 소매업)]

4

도소매업 부문

가전, 컴퓨터·통신기기 소매점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소프트웨어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473(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문화상품소매점

서적, 문구, 음반, 스포츠용품, 게임용구 및 장난감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476(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사이버쇼핑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상소매점(상품판매만 해당)[47911 (전자상거래업)]

기타무점포판매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TV홈쇼핑, 계약배달판매 등[47919(기타통신판매업), 4799(기타무점포소매업)]

홈쇼핑

TV 홈쇼핑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홈쇼핑 판매)



4

도소매업 부문

5. 대표업종별 포괄 산업분류

대표업종	업종명	산업분류	산업분류명
GA10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신제품판매업은 본조사 대상 ○ 중고차는 수수료가 아닌 외형매출액 조사	45110	자동차 신제품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GA20	자동차부품 및 이륜차판매업 ○ 수리관련 사업체는 제외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제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GB20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 농축산물 가공품, 수산물: GB31	46201	곡물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3	사료 도매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GB31	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46313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GB32	음료 도매업 ○ 우유, 요구르트, 차류(티백)는 GB31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GB41	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 전기담요(GB42) ○ 등산화(GB46) ○ 직물벽지(GB60) ○ 원사, 직물(GB72)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	내의 도매업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대표 업종	업 종 명	산업 분류	산 업 분 류 명
GB42	가정용기기, 가정용가구 및 악기도매업 ○ 가전제품, 사무용가구(GB52) ○ 의료용가구(GB53) ○ 수공구, 보일러(GB60)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46432	전구 ·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46462	악기 도매업
GB43	의약품 도매업 ○ 의약품(GB53)	46441	의약품 도매업
GB44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46443	화장품 도매업
GB45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 장판지, 벽지(GB60) ○ 판지상자, 골판지, 펄프(GB72)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GB46	오락, 취미, 경기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도매업 ○ 가정용 캠코더(GB52)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B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도매업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GB52	사무용품 및 가전제품 도매업	46522	통신 · 정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GB53	산업용기계장비 도매업 ○ 정형외과용품(GB43) ○ 안경, 사진기(GB46)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2	건설 · 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GB60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46621	배관 및 냉 · 난방장치 도매업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46691	도로 도매업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대표 업종	업 종 명	산업 분류	산 업 분 류 명
GB71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1차 금속제품을 가공한 판제품은 GB53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GB72	기타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41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46742	직물 도매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GC111	백화점 ○ 전수업종	47111	백화점
GC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 전수 업종 ○ 3000㎡ 이상 전문점은 취급상품에 따라 해당 업종에 분류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GC121	슈퍼마켓	47121	슈퍼마켓
GC122	체인화 편의점 ○ 본사조사(8대 편의점)	47122	체인화 편의점
GC129	기타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 구멍가게(165㎡ 미만) ○ 만물상(3000㎡ 미만)	47129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GC211	식료품 소매업 ○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GC213) ○ 애완용 동물 사료(GC84)	47211	곡물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GC212	수산물 소매업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47213	수산물 소매업
GC213	가공식품 소매업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GC214	담배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GC31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GC32	컴퓨터 및 통신기기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GC41	가정용직물 및 의복소매업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12	한복 소매업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5	내의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대표 업종	업 종 명	산업 분류	산 업 분 류 명
GC42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가죽 장갑, 벨트(GC41) ○ 등산화(GC62)	47420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GC51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GC52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GC53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가정용품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GC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GC62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GC71	차량용연료 판매업 ○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GC72	가정용연료 판매업 ○ 행정자료(한국석유공사) 이용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GC8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약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액을 매출액에 포함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GC82	화장품 및 비누 소매업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GC83	귀금속 및 사무용기기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GC84	화초 및 기타선물용품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GC91	전자상거래판매업 ○ 거래액기준으로 조사	47911	전자상거래업
GC92	기타무점포판매업 ○ 홈쇼핑의 경우 거래액기준 조사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6. 상품분류 기준

가. 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고가의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11. 가전제품	- 전열기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믹서,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식 이미용기구, 전기히터, 전기 모포 등 - 영상, 음향기기 : TV, VTR, DVD,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위성안테나, 오디오, 녹음기, MP3, 노래방기기 등 - 기타 : 정수기,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47320
12. 통신기기	휴대폰, 카폰, 전화기, 내비게이션, 무전기 등	47312
13.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바코드리더기, 소프트웨어 등	47311
14. 가구	장롱, 장식장, 침대, 의자, 식탁, 화장대, 사무용 가구 등	47520
15. 승용차	승용차, RV, CDV, SUV 등(중고 승용차 포함)	451*
16. 상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중고상용차 포함)	451*
19. 기타	- 난방기기 : 석유난로, 보일러 - 기계공구, 전동드릴 - 전기용품, 조명장치, 전기스탠드 - 악기 : 피아노, 국악기 - 의료기기, 보청기, 혈압측정기, 휠체어 - 사무용기기: 전자복사기, 금전등록기, 팩시밀리 - 안경, 콘택트렌즈 - 사진기, 사진용품 - 정밀기기, 현미경, 망원경 - 시계, 귀금속, 금반지, 다이아반지 - 예술품, 골동품, 조각품 - 수석, 총포류	47511* 47512 47591 47593 47632 47812 47821 47822 47823 47829 47830 47841 47859

나. 준내구재 :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21. 의복	◦ 의복 : 남녀용 정장, 속옷, 유아복, 캐주얼, 한복 등 ◦ 의복액세서리 : 양말, 스타킹, 모자, 장갑, 넥타이, 머플러 등 <제외> 직물제품(침구, 커튼, 카펫, 수건 등)은 29	47412~6 47419
22. 신발	◦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제외> 등산화는 24	47420
23. 가방	◦ 가방, 핸드백, 지갑, 배낭, 트렁크 등	47430
24. 운동, 오락	◦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기록한 CD 및 테이프 ◦ 운동용품, 경기용품, 헬스기구, 등산장비 등 ◦ 게임용품, 낚시장비, 완구류, 인형 등 <제외> 공CD는 34, 컴퓨터소프트웨어는 13	47620 47631 47640
29. 기타	◦ 가정용 직물제품 : 침구류, 커튼, 카펫, 수건 등 ◦ 철물류(망치, 톱, 드라이버 등), 열쇠 ◦ 건축자재 : 페인트, 유리, 목재, 벽지, 장판 ◦ 주방용품 : 밥솥, 칼, 식기, 용기류 ◦ 건조대, 쓰레기통, 수세미, 우산 ◦ 악세서리, 가발, 장식용품, 기념품 ◦ 애완동물, 관상어 <제외> 전기제품(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은 내구재	47411 47511* 47513 47519 47599* 47842 47852*

다. 비내구재 :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

상품분류	조 사 범 위	관련업종
31. 음식료품	◦ 식료품 :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빵, 과자, 건강보조식품 등 ◦ 음료, 주류	4721 47221
32. 의약품	◦ 의약품 : 한약품, 가정용 살충제 등 ◦ 반창고, 탈지면, 붕대 등 의료용품 포함 <제외> 의료기기는 19	47811
33. 화장품	◦ 화장품, 향수, 비누, 샴푸, 치약, 염색약 등 <제외> 세제는 39	47813
34. 서적, 문구	◦ 서적 : 교재, 잡지, 교과서, 학습용 테이프 등 ◦ 문구 : 노트, 물감, 복사지, 공CD	47611 47612
39. 기타	◦ 담배, 신문 ◦ 가정용 소모품 : 화장지, 고무장갑, 세제, 양초, 랩 등 ◦ 화초, 꽃, 분재류, 관상수 ◦ 애완동물 사료, 애완동물약품	47222 47599* 47851 47852*

7. 소매업체별 분류

분 류	내 용	매장 면적	산업분류 ¹⁾
점 포 매 점	백 화 점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 각 매장마다 전용판매원이 고정 배치되고 매장별로 직접매매 및 계산활동 수행	3,000㎡ 이상 47111(백화점)
	대 형 마 트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	3,000㎡ 이상 47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슈 퍼 마 켓	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	3,000㎡ 미만 47121(슈퍼마켓)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90(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편 의 점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소매)하는 소매점	- 47122(체인화 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451(자동차판매업 중 승용차) 47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 478(기타 상품 전문소매업)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소매점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소프트웨어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473(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무 점 포 매 점	문화상품소매점	서적, 문구, 음반, 스포츠용품, 게임용구 및 장난감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사이버쇼핑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가상 소매점(상품판매만 해당)	- 47911(전자상거래업)
	기타무점포판매 홈쇼핑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TV홈쇼핑, 계약배달판매 등 TV 홈쇼핑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	- 47919(기타통신판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홈쇼핑 판매

주: 1) 2008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제9차 개정)

※ 4786(중고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등은 제외

8. 서비스업동향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 10150 호

서비스업동향조사표(4)

- 도매 및 소매업 (G) -

201 년 월분 (확정, 잠정)

· 이 조사는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판매동향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국가지정통계 10150호)입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 업 체 명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담당자 ID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① 월간 영업일수 일② 월말 종사자수 명③ 매장면적(소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기입) m²

④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④-1. 도매업 (단위: 백만원)

총 판매액	수출액	국내 판매액

④-2. 소매업 (단위: 백만원)

(「직영」, 「특정매입」, 「임대」 매장의 상품판매액을 포함하여 기입)

내구재	판매액	준내구재	판매액	비내구재	판매액
11. 가전제품		21. 의복		31. 음식료품	
12. 통신기기		22. 신발		32. 의약품	
13. 컴퓨터		23. 가방		33. 화장품	
14. 가구		24. 운동, 오락		34. 서적, 문구	
15. 승용차		29. 기타		39. 기타	
16. 상용차					
19. 기타					

수 월말 상품재고액(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단위: 백만원)

상품재고액	□ 판매가(재고액 평가 방법이 판매가 기준이면 √ 표시)

※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 매장분을 기입

⑥ 비교(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FAX	
			E-mail	

통계청
STATISTICS KOREA4
도소매업 부문

[조사표 작성 요령]

I. 유의사항

- 이 조사는 도소매업의 판매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판매액과 재고액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합니다.

II.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①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
- ② 월말 종사자수 : 월말 기준의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③ 매장면적 : 소매업의 사업체에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연면적
- ④ 월간 상품판매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소매업과 자동차 판매업은 **④-2.소매업**, 도매업과 자동차부품 및 이륜차 판매업은 **④-1.도매업**에 기입
 -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타산업 매출액은 제외

<상품군별 분류>

분류	예시
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고가의 상품)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히터, TV, 오디오, 정수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
	통신기기 휴대폰, 전화기, 내비게이션, 무선기 등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가구 장롱, 장식장, 침대, 의자, 식탁, 화장대, 사무용 가구 등
준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저가의 상품)	기타 내구재 난방기기, 기계공구, 전기용품, 조명장치, 악기, 휠체어, 의료기기, 보청기, 사무용기기, 안경, 사진기, 시계,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등
	의복 남녀용 정장, 속옷, 유아복, 캐주얼, 한복, 양말, 스타킹, 모자, 장갑, 넥타이 등
	신발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가방 가방, 핸드백, 지갑, 배낭, 트렁크 등
비내구재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	운동, 오락 영화 및 음악CD, 운동용품, 경기용품, 등산장비, 게임용품, 낚시장비, 완구류 등
	기타 준내구재 침구류, 철물 및 건축자재류, 주방용품, 우산, 악세사리, 장식용품, 기념품 등
	음식료품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빵, 건강보조식품, 음료, 주류 등
	의약품 의약품, 반창고, 탈지면, 의료용품 등
화장품	화장품, 향수, 비누, 샴푸 등
	서적, 문구 서적, 교재, 잡지, 교과서, 학습용 테이프, 문구, 노트, 물감, 복사지 등
	기타 비내구재 담배, 신문, 가정용품, 화장품, 세제, 화장, 화장품, 애완동물 사료 등

수 월말 상품재고액(구입원가 기준으로 기입)

- 모든 사업체가 기입하되, 소매업체는 직영 및 특정매입매장의 재고액을 기입

⑥ 비교(상품판매액 증감사유, 사업체 변동 및 특이사항 등)

- 상품판매액이 $\pm 20\%$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체 현황

○○지방통계청(○○사무소)

1. 사업체명				
2. 산업분류				
3. 소재지				
4. 대표자				
5. 응답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FAX	
6. 건물면적 (도소매업만 해당)	㎡			
7. 매장면적 (도소매업만 해당)	㎡			
8. 종사자수	명			
9. 사업내용 (취급상품)				
10. 매출액				
11. 개점일	20 년 월 일 개점			
12. 참고사항				

4

도소매업 부문

통계청 작성 통계현황(52종)

(2011.1.3.현재)

작성방법	작성주기	통 계 명 칭	
조사통계(42종)			
전수조사 (13종)	5 년	• 인구총조사 • 경제총조사	• 주택총조사 • 농림어업총조사
	2 년	• 통계인력및예산조사	
	매 년	• 광업제조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 건설업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반기 분 기	• 어류양식동향조사 •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매 월	• 인구동향조사	
표본조사 (29종)	5 년	• 생활시간조사	•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매 년	• 사회조사 • 도소매업조사 • 농가경제조사 • 어가경제조사 • 어업조사 • 가계금융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농업면적조사	• 운수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농업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사교육비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분 기	• 가축동향조사 • 지역별고용조사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매 월	• 경제활동인구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건설경기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기계수주동향조사 • 사이버쇼핑동향조사
가공통계 (8종)	5 년	• 장래인구추계	• 장래가구추계
	매 년	• 국가자산통계 • 생명표	• 지역소득 • 사망원인통계
	매 월	•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지수
보고통계 (2종)	매 년	• 국제인구이동통계	
	매 월	• 국내인구이동통계	